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¹⁾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I. 서론

-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됨.
-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최소한의 단순 수용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치료 등의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은 제한되어 있어 시설 거주자의 삶의 질은 상당히 낮은 수준.

〈표 1-1〉 산업평균에 따른 사회복지부문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단위: 천원, %)

| 구분 | 2007년도 | | 2008년도 | | 2009년도 | |
|-----------|-----------|--------------|-----------|--------------|-----------|--------------|
| | 월 평균임금 | 전 산업 평균대비 | 월 평균임금 | 전 산업 평균대비 | 월 평균임금 | 전 산업 평균대비 |
| 전 산업 | 2,560.6 | 100.0 | 2,639.7 | 100.0 | 2,622.0 | 100.0 |
| 사회복지사업 | 1,630.3 | 63.7 | 1,683.1 | 63.8 | 1,643.2 | 62.7 |
| 교육서비스업 | 2,715.6 | 106.1 | 2,732.7 | 103.5 | 2,629.2 | 100.3 |
| 사업서비스업 | 2,319.0 | 90.6 | 2,547.0 | 96.5 | 2,506.3 | 95.6 |
| 보건업 | 2,644.5 | 103.3 | 2,691.8 | 102.0 | 2,644.1 | 100.8 |
| 숙박 및 음식점업 | 1,727.0 | 67.4 | 1,824.6 | 69.1 | 1,820.2 | 69.4 |

자료: 통계청, KOSIS, 각년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현재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2009년 현재 전 산업대비 62.7%로 매우 낮은 수준.
-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보수로 인한 사기 저하, 잦은 이직 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담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변용찬, 이승기, 남기룡, 이민경, 허수정), 보건복지부 (2010), 결과 내용을 요약 발췌함.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체계의 구축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함.

II. 본론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현황 조사

가. 조사 개요

○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양로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생활시설의 6개 유형의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

- 조사는 각 사회복지시설의 직능단체를 통한 우편 발송 및 메일 발송을 통하여 실시됨.

- 조사에 참여한 시설 수는 총 576개 기관으로, 노인양로시설 21개 기관, 노인복지관 113개 기관, 장애인생활시설 50개 기관, 장애인복지관 72개 기관, 종합사회복지관 190개 기관, 아동생활시설 130개 기관임²⁾.

- 조사 실시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 대상 기관 및 조사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 조사 기관

| 시설 유형 | 기관 수 | 조사 참석 기관 | 비율 |
|---------|-------|----------|------|
| 노인양로시설 | 285 | 21 | 7.4 |
| 노인복지관 | 237 | 113 | 47.7 |
| 장애인생활시설 | 343 | 50 | 14.6 |
| 장애인복지관 | 167 | 72 | 43.1 |
| 종합사회복지관 | 418 | 190 | 45.5 |
| 아동생활시설 | 239 | 130 | 54.4 |
| 계 | 1,689 | 576 | 34.1 |

- 조사 내용은 인력현황(정규직 기준)에 대해서는 응답 기관에 종사하는 정규직원 전원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576개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 10,878명에 대한 월평

2) 본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총무 및 회계 관리자(과/부장급) 1인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본 조사에 참여한 시설직능단체는 다음과 같음: (1)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 한국노인복지관협회 (3)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4)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6)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균 보수액 등 보수현황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함.

〈표 2-2〉 조사 내용

| 구분 | 조사 내용 |
|-------------------|--|
| 일반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명 ·설립연도 ·관할자치단체 ·시설운영주체 ·시설소재지 및 연락처 ·시설종류1,2 ·직원 수 |
| 인력 현황 (정규직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생년월 ·성별 ·직위 ·직종 ·세부직종 ·직급 ·호봉 ·학력 ·현시설 재직 기간(2009.12.31기준) ·사회복지 총 재직경력(2009.12.31기준) ·평균 근무시간 ·소지자격증 현황 ·월평균 임금(2009년 기준, 월평균) ·월평균 기본급(본봉) ·월평균수당 (본봉 외 수당, 연장근로수당제외) |
| 시설 인건비 지급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지급 총액 (2009년 기준) ·인건비 중 지자체지원금/법인보조금/시설후원금/이용료/기타 금액 ·기본급보수기준표 기준 ·지자체 등에서 보전수당 지급 여부 ·지자체 등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지난 3년간 보조금 보수 인상률 |
| 관련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원체계로 인한 문제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현 가이드라인)에서 중요한 문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역할 수행 주체에 대한 의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타 의견 |

나. 조사 결과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반적 보수수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액은 평균 2,063,469원이며, 호봉별 평균

급여의 평균은 2,497,816원으로 나타남³⁾.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에 대한 조사는 2008년 보건복지부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바 있으며⁴⁾, 2008년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1,757,451원, 호봉별 평균급여의 평균은 2,321,769원이었음. 단순평균값에 의해서는 종사자의 전반적 보수수준이 306천원이 상승하였고, 호봉별 평균급여의 평균에 의하면(각 호봉별 인구분포 비율의 차이를 없애면), 176천원이 상승함.

〈표 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액 (2010년 조사)

(단위: 원, 명)

| 호봉 구분 | 명 | 비율 | 월평균 보수액 | | 월 평균급여의 평균값 |
|-------|---------|-------|-----------|---------|-------------|
| | | | 평균값 | 표준편차 | |
| 1-5 | 4,698 | 45.0 | 1,733,044 | 260,982 | 1,732,498 |
| 6-10 | 3,414 | 32.7 | 2,107,835 | 334,155 | 2,127,589 |
| 11-15 | 1,256 | 12.0 | 2,508,506 | 411,027 | 2,538,793 |
| 16-20 | 549 | 5.3 | 2,821,128 | 518,189 | 2,836,261 |
| 21-30 | 512 | 4.0 | 3,274,257 | 586,729 | 3,253,941 |
| Total | 10,429* | 100.0 | 2,063,469 | 574,310 | 2,497,816 |

주 : (*) 월보수액 무응답 (114명), 호봉 무응답 (335명) 제외

〈표 2-4〉 2008년도 조사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액

| 호봉그룹 | 평균 | 빈도 | 표준편차 | 백분율 | 호봉별 평균급여의 평균 |
|-------|-----------|--------|---------|-------|--------------|
| 1-5 | 1,518,298 | 44,906 | 242,290 | 57.7 | 1,531,972 |
| 6-10 | 1,906,703 | 21,510 | 375,675 | 27.6 | 1,952,606 |
| 11-15 | 2,198,485 | 6,356 | 361,463 | 8.2 | 2,216,437 |
| 16-20 | 2,542,204 | 2,899 | 382,110 | 3.7 | 2,542,311 |
| 21-30 | 2,900,834 | 2,144 | 498,480 | 2.8 | 2,843,643 |
| 합계 | 1,757,451 | 77,814 | 458,092 | 100.0 | 2,321,769 |

출처 : 200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8)

- 호봉 내에서 보면, 2010년 조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액은 1-5호봉의 경우 1,733천원, 6-10호봉의 경우 2,107천원, 11-15호봉은 2,508천원,

3) 월평균 보수액은 10,429명의 종사자의 2009년 기준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4) 모든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대한 조사로, 전국 725개의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 종사자 9,436명을 토대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2007년 연말 기준으로 월평균 급여가 산정됨.

16-20호봉은 2,821천원, 21-30호봉은 3,274천원으로 나타남.

- 2008년 조사에 비해 1-5호봉은 214천원, 6-10호봉은 201천원, 11-15호봉은 310천원, 16-20호봉은 278천원, 21-30호봉은 373천원이 증가.

2) 지역별 종사자 보수 현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1-5호봉은 150만원~180만원 사이, 6-10호봉은 180만원~230만원 사이, 10-15호봉은 250만원 내외로 지역별 차이가 심하지 않으나, 16-20호봉은 220만원~300만원 사이로 차이가 벌어지고, 21-30호봉은 지역별로 280만원~350만원 사이로 차이가 많이 나타남.

〈표 2-5〉 지역별 호봉기준에 따른 월평균보수액

(단위: 명,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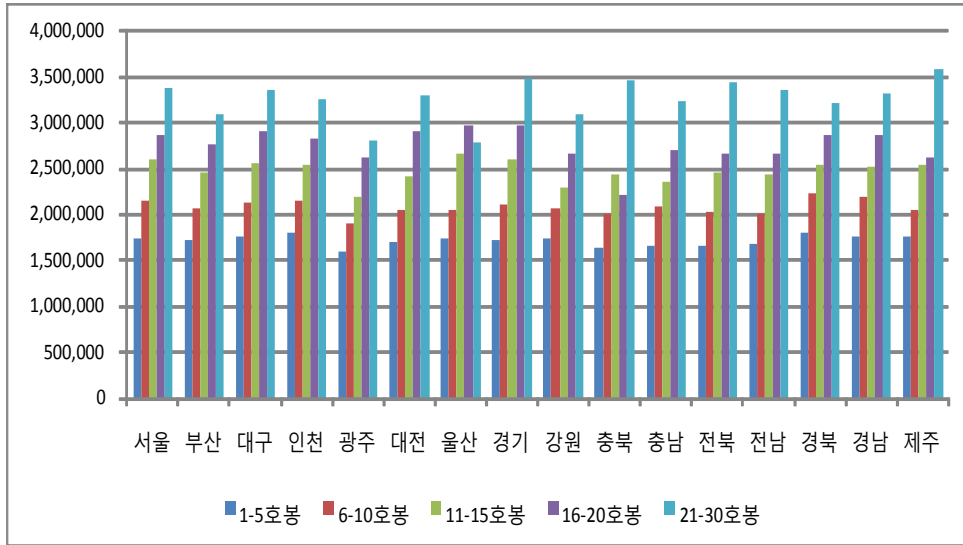
| 지역 | 호봉기준 | 명 | 월평균보수액 | 표준편차 |
|----|-------|-------|-----------|---------|
| 서울 | 1-5 | 1,197 | 1,751,952 | 270,500 |
| | 6-10 | 871 | 2,157,595 | 415,955 |
| | 11-15 | 341 | 2,598,161 | 429,577 |
| | 16-20 | 137 | 2,864,996 | 603,413 |
| | 21-30 | 154 | 3,385,872 | 608,011 |
| | 계 | 2,700 | 2,139,353 | 599,494 |
| 부산 | 1-5 | 380 | 1,730,783 | 255,033 |
| | 6-10 | 288 | 2,070,739 | 276,066 |
| | 11-15 | 106 | 2,458,819 | 415,703 |
| | 16-20 | 56 | 2,765,599 | 555,179 |
| | 21-30 | 100 | 3,091,065 | 499,651 |
| | 계 | 930 | 2,127,619 | 562,894 |
| 대구 | 1-5 | 246 | 1,768,897 | 267,062 |
| | 6-10 | 209 | 2,122,503 | 289,803 |
| | 11-15 | 74 | 2,554,008 | 486,822 |
| | 16-20 | 60 | 2,918,908 | 536,973 |
| | 21-30 | 45 | 3,363,391 | 634,508 |
| | 계 | 634 | 2,199,109 | 609,475 |
| 인천 | 1-5 | 350 | 1,801,775 | 292,517 |
| | 6-10 | 170 | 2,156,420 | 326,959 |
| | 11-15 | 68 | 2,542,765 | 367,001 |
| | 16-20 | 34 | 2,836,052 | 395,205 |
| | 21-30 | 32 | 3,252,991 | 586,526 |
| | 계 | 654 | 2,095,783 | 523,156 |

〈표 2-5〉 지역별 호봉기준에 따른 월평균보수액 (계속)

| 지역 | 호봉기준 | 명 | 월평균보수액 | 표준편차 |
|----|-------|-------|-----------|---------|
| 광주 | 1-5 | 154 | 1,591,214 | 317,432 |
| | 6-10 | 171 | 1,907,067 | 226,073 |
| | 11-15 | 54 | 2,186,903 | 264,259 |
| | 16-20 | 28 | 2,614,315 | 319,078 |
| | 21-30 | 19 | 2,810,792 | 809,746 |
| | 계 | 426 | 1,915,150 | 463,859 |
| 대전 | 1-5 | 169 | 1,703,886 | 235,816 |
| | 6-10 | 95 | 2,041,915 | 268,256 |
| | 11-15 | 38 | 2,427,712 | 429,013 |
| | 16-20 | 16 | 2,910,210 | 356,983 |
| | 21-30 | 19 | 3,288,913 | 382,187 |
| | 계 | 337 | 2,027,432 | 528,816 |
| 울산 | 1-5 | 92 | 1,735,215 | 336,871 |
| | 6-10 | 54 | 2,049,881 | 293,527 |
| | 11-15 | 16 | 2,669,080 | 383,089 |
| | 16-20 | 7 | 2,972,870 | 762,488 |
| | 21-30 | 3 | 2,786,281 | 455,704 |
| | 계 | 172 | 1,989,579 | 502,665 |
| 경기 | 1-5 | 607 | 1,717,592 | 206,249 |
| | 6-10 | 380 | 2,114,624 | 328,236 |
| | 11-15 | 146 | 2,602,781 | 463,620 |
| | 16-20 | 50 | 2,968,122 | 575,462 |
| | 21-30 | 27 | 3,487,132 | 618,700 |
| | 계 | 1,210 | 2,040,248 | 526,411 |
| 강원 | 1-5 | 162 | 1,734,128 | 224,033 |
| | 6-10 | 187 | 2,079,116 | 224,456 |
| | 11-15 | 82 | 2,304,108 | 277,391 |
| | 16-20 | 21 | 2,667,514 | 490,594 |
| | 21-30 | 14 | 3,100,605 | 535,760 |
| | 계 | 466 | 2,055,980 | 407,695 |
| 충북 | 1-5 | 94 | 1,645,792 | 293,235 |
| | 6-10 | 48 | 2,016,031 | 477,661 |
| | 11-15 | 10 | 2,431,409 | 506,537 |
| | 16-20 | 2 | 2,203,922 | 267,501 |
| | 21-30 | 4 | 3,454,663 | 424,213 |
| | 계 | 158 | 1,860,851 | 509,753 |
| 충남 | 1-5 | 191 | 1,664,129 | 276,432 |
| | 6-10 | 178 | 2,082,890 | 245,160 |
| | 11-15 | 47 | 2,367,402 | 341,653 |
| | 16-20 | 14 | 2,707,323 | 349,976 |
| | 21-30 | 13 | 3,234,858 | 518,684 |
| | 계 | 443 | 1,986,064 | 454,248 |

〈표 2-5〉 지역별 호봉기준에 따른 월평균보수액 (계속)

| 지역 | 호봉기준 | 명 | 월평균보수액 | 표준편차 |
|----|-------|-----|-----------|---------|
| 전북 | 1-5 | 133 | 1,661,645 | 232,776 |
| | 6-10 | 126 | 2,021,647 | 250,614 |
| | 11-15 | 39 | 2,454,581 | 399,457 |
| | 16-20 | 14 | 2,663,421 | 294,211 |
| | 21-30 | 5 | 3,448,246 | 290,106 |
| | 계 | 317 | 1,974,713 | 444,087 |
| 전남 | 1-5 | 294 | 1,680,885 | 221,454 |
| | 6-10 | 181 | 2,016,955 | 317,355 |
| | 11-15 | 69 | 2,444,203 | 362,176 |
| | 16-20 | 43 | 2,661,871 | 380,880 |
| | 21-30 | 25 | 3,365,634 | 561,392 |
| | 계 | 612 | 2,004,086 | 518,293 |
| 경북 | 1-5 | 185 | 1,800,170 | 254,064 |
| | 6-10 | 193 | 2,226,936 | 323,150 |
| | 11-15 | 70 | 2,549,511 | 336,957 |
| | 16-20 | 24 | 2,872,782 | 388,688 |
| | 21-30 | 16 | 3,215,895 | 426,580 |
| | 계 | 488 | 2,175,608 | 478,097 |
| 경남 | 1-5 | 370 | 1,768,986 | 245,279 |
| | 6-10 | 215 | 2,193,548 | 262,557 |
| | 11-15 | 84 | 2,514,989 | 295,636 |
| | 16-20 | 37 | 2,868,750 | 521,727 |
| | 21-30 | 34 | 3,316,409 | 560,724 |
| | 계 | 740 | 2,103,106 | 511,620 |
| 제주 | 1-5 | 74 | 1,754,725 | 207,073 |
| | 6-10 | 48 | 2,051,006 | 240,375 |
| | 11-15 | 12 | 2,541,008 | 332,553 |
| | 16-20 | 6 | 2,618,928 | 249,830 |
| | 21-30 | 2 | 3,580,035 | 219,960 |
| | 계 | 142 | 1,983,547 | 401,812 |



[그림 2-1] 지역에 따른 호봉별 평균 월보수액

○ 지역 내 시설유형별 종사자의 월 보수 수준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월평균 보수액

(단위: 명, 원)

| 지역 | 시설유형 | 명 | 월평균 보수액 | 표준편차 | 평균 호봉 |
|----|---------|-------|-----------|---------|-------|
| 서울 | 노인양로시설 | 16 | 2,016,755 | 727,854 | 13.6 |
| | 노인복지관 | 419 | 2,057,164 | 554,191 | 6.5 |
| | 장애인생활시설 | 287 | 2,111,702 | 466,920 | 7.9 |
| | 장애인복지관 | 594 | 2,019,130 | 706,798 | 8.2 |
| | 종합사회복지관 | 851 | 2,114,612 | 646,436 | 7.0 |
| | 아동생활시설 | 653 | 2,232,915 | 548,957 | 9.1 |
| | 계 | 2,820 | 2,112,507 | 613,979 | 7.8 |
| 부산 | 노인양로시설 | 18 | 2,086,930 | 532,672 | 11.0 |
| | 노인복지관 | 87 | 2,066,256 | 681,434 | 5.4 |
| | 장애인생활시설 | 34 | 2,261,055 | 370,441 | 9.6 |
| | 장애인복지관 | 42 | 1,930,967 | 423,420 | 8.3 |
| | 종합사회복지관 | 266 | 2,162,259 | 679,348 | 7.1 |
| | 아동생활시설 | 495 | 2,126,686 | 488,422 | 10.8 |
| | 계 | 942 | 2,126,514 | 564,341 | 9.1 |

〈표 2-6〉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월평균 보수액(계속)

| 지역 | 시설유형 | 명 | 월평균 보수액 | 표준편차 | 평균 호봉 |
|----|---------|-----------|-----------|---------|-------|
| 대전 | 노인양로시설 | - | - | - | - |
| | 노인복지관 | 25 | 2,070,816 | 480,086 | 8.1 |
| | 장애인생활시설 | 67 | 1,713,956 | 348,580 | 6.0 |
| | 장애인복지관 | - | - | - | - |
| | 종합사회복지관 | 74 | 2,132,407 | 654,041 | 8.9 |
| | 아동생활시설 | 177 | 2,087,114 | 518,704 | 7.1 |
| | 계 | 343 | 2,022,807 | 541,282 | 7.3 |
| 울산 | 노인양로시설 | 10 | 2,146,406 | 402,523 | 4.6 |
| | 노인복지관 | 20 | 2,184,846 | 631,143 | 6.2 |
| | 장애인생활시설 | 53 | 1,984,240 | 337,186 | 5.3 |
| | 장애인복지관 | 23 | 2,074,989 | 313,709 | 8.0 |
| | 종합사회복지관 | 30 | 2,135,388 | 683,788 | 7.2 |
| | 아동생활시설 | 38 | 1,656,696 | 457,621 | 6.8 |
| | 계 | 174 | 1,983,141 | 506,780 | 6.4 |
| 경기 | 노인양로시설 | 45 | 2,020,952 | 472,505 | 7.3 |
| | 노인복지관 | 434 | 2,012,562 | 582,597 | 6.5 |
| | 장애인생활시설 | 203 | 1,958,147 | 395,720 | 6.7 |
| | 장애인복지관 | 264 | 2,059,903 | 450,717 | 6.8 |
| | 종합사회복지관 | 269 | 2,088,813 | 647,928 | 7.0 |
| | 아동생활시설 | 26 | 2,126,031 | 620,068 | 7.6 |
| | 계 | 1,241 | 2,032,942 | 543,697 | 6.7 |
| 강원 | 노인양로시설 | - | - | - | - |
| | 노인복지관 | 27 | 2,044,806 | 556,679 | 6.3 |
| | 장애인생활시설 | 168 | 2,122,903 | 205,541 | 9.5 |
| | 장애인복지관 | 75 | 1,936,623 | 440,002 | 4.9 |
| | 종합사회복지관 | 24 | 2,321,930 | 805,298 | 9.0 |
| | 아동생활시설 | 171 | 1,967,648 | 469,755 | 8.0 |
| | 계 | 465 | 2,041,502 | 432,083 | 8.0 |
| 충북 | 노인양로시설 | - | - | - | - |
| | 노인복지관 | 112 | 1,730,242 | 494,367 | 5.8 |
| | 장애인생활시설 | - | - | - | - |
| | 장애인복지관 | 13 | 2,199,673 | 464,215 | 5.6 |
| | 종합사회복지관 | 47 | 1,786,929 | 678,027 | 6.2 |
| | 아동생활시설 | - | - | - | - |
| 계 | 172 | 1,781,212 | 558,979 | 5.9 | |
| 충남 | 노인양로시설 | - | - | - | - |
| | 노인복지관 | 90 | 1,989,990 | 574,284 | 6.7 |
| | 장애인생활시설 | 155 | 2,007,029 | 283,416 | 8.5 |
| | 장애인복지관 | 120 | 2,056,235 | 482,674 | 6.7 |
| | 종합사회복지관 | 56 | 1,802,868 | 534,245 | 5.0 |
| | 아동생활시설 | 24 | 1,857,298 | 468,363 | 4.7 |
| | 계 | 445 | 1,983,084 | 457,971 | 6.9 |

〈표 2-6〉 지역별 시설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월평균 보수액 (계속)

| 지역 | 시설유형 | 명 | 월평균 보수액 | 표준편차 | 평균 호봉 |
|----|---------|-----|-----------|---------|-------|
| 전북 | 노인양로시설 | 12 | 2,181,088 | 651,294 | 10.6 |
| | 노인복지관 | 78 | 1,918,702 | 537,645 | 6.4 |
| | 장애인생활시설 | 51 | 1,858,730 | 279,973 | 6.5 |
| | 장애인복지관 | 164 | 1,935,827 | 516,355 | 7.5 |
| | 종합사회복지관 | 38 | 1,761,797 | 371,306 | 6.9 |
| | 아동생활시설 | - | - | - | - |
| | 계 | 343 | 1,909,770 | 487,773 | 7.2 |
| 전남 | 노인양로시설 | 44 | 2,186,756 | 486,587 | 9.3 |
| | 노인복지관 | 84 | 1,913,212 | 549,278 | 5.7 |
| | 장애인생활시설 | 32 | 2,038,692 | 400,870 | 6.0 |
| | 장애인복지관 | 138 | 1,904,639 | 494,105 | 7.3 |
| | 종합사회복지관 | 69 | 2,022,776 | 627,666 | 8.0 |
| | 아동생활시설 | 251 | 2,033,801 | 499,148 | 7.9 |
| | 계 | 618 | 1,998,480 | 519,505 | 7.5 |
| 경북 | 노인양로시설 | 61 | 2,234,416 | 594,215 | 9.2 |
| | 노인복지관 | 42 | 2,100,662 | 640,193 | 7.5 |
| | 장애인생활시설 | 158 | 2,185,307 | 375,861 | 7.7 |
| | 장애인복지관 | 112 | 2,087,575 | 467,165 | 7.6 |
| | 종합사회복지관 | 97 | 2,103,816 | 523,545 | 7.4 |
| | 아동생활시설 | 9 | 2,267,556 | 514,665 | 9.0 |
| | 계 | 479 | 2,146,330 | 489,046 | 7.8 |
| 경남 | 노인양로시설 | - | - | - | - |
| | 노인복지관 | 57 | 2,003,848 | 598,604 | 6.3 |
| | 장애인생활시설 | 286 | 1,988,589 | 385,063 | 6.6 |
| | 장애인복지관 | 81 | 2,345,781 | 489,650 | 8.8 |
| | 종합사회복지관 | 92 | 2,020,227 | 720,205 | 7.1 |
| | 아동생활시설 | 235 | 2,196,414 | 490,481 | 7.8 |
| | 계 | 751 | 2,097,180 | 512,164 | 7.3 |
| 제주 | 노인양로시설 | - | - | - | - |
| | 노인복지관 | - | - | - | - |
| | 장애인생활시설 | 87 | 1,943,191 | 336,152 | 5.9 |
| | 장애인복지관 | 23 | 1,942,391 | 419,289 | 7.1 |
| | 종합사회복지관 | 33 | 2,118,487 | 512,280 | 7.3 |
| | 아동생활시설 | - | - | - | - |
| | 계 | 143 | 1,983,515 | 400,395 | 6.4 |

3) 보수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현황

○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보수를 정하는 기준에는 복지부 지침, 지자체 자체 기준, 직능단체 기준, 시설(법인)의 자체 기준 및 기타 기준이 있음.

○ 지역별로 시설의 보수기준 현황을 보면, 지자체 자체 기준을 따르는 비율이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곳은 29.3%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이외에 기관(법인)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비율이 11.2%, 직능단체기준

에 따르는 비율이 2.5%, 기타가 2.4%로 나타남.

〈표 2-7〉 지역별 급여보수기준 현황

(단위: %)

| 지역 | 명 | 급여보수기준 | | | | | 합계 |
|----|--------|--------|------|------|------|------|-------|
| | | 복지부 | 지자체 | 직능단체 | 기관기준 | 기타 | |
| 서울 | 2,817 | 26.2 | 63.0 | 7.5 | 0.0 | 3.3 | 100.0 |
| 부산 | 951 | 30.0 | 53.1 | 0.0 | 15.9 | 1.1 | 100.0 |
| 대구 | 670 | 11.5 | 47.8 | 0.0 | 40.7 | 0.0 | 100.0 |
| 인천 | 647 | 7.6 | 87.6 | 0.0 | 4.8 | 0.0 | 100.0 |
| 광주 | 459 | 24.0 | 52.3 | 1.7 | 20.3 | 1.7 | 100.0 |
| 대전 | 344 | 42.7 | 28.5 | 0.0 | 17.4 | 11.3 | 100.0 |
| 울산 | 174 | 40.2 | 50.6 | 0.0 | 9.2 | 0.0 | 100.0 |
| 경기 | 1,237 | 30.0 | 55.9 | 0.0 | 10.3 | 3.7 | 100.0 |
| 강원 | 487 | 56.3 | 39.2 | 0.0 | 1.4 | 3.1 | 100.0 |
| 충북 | 175 | 20.0 | 18.9 | 0.0 | 61.1 | 0.0 | 100.0 |
| 충남 | 455 | 32.5 | 50.5 | 0.0 | 13.4 | 3.5 | 100.0 |
| 전북 | 345 | 18.0 | 61.2 | 2.3 | 16.5 | 2.0 | 100.0 |
| 전남 | 618 | 74.6 | 12.3 | 5.3 | 7.8 | 0.0 | 100.0 |
| 경북 | 486 | 38.7 | 38.5 | 0.0 | 19.1 | 3.7 | 100.0 |
| 경남 | 766 | 18.5 | 72.7 | 0.0 | 8.7 | 0.0 | 100.0 |
| 제주 | 143 | 0.0 | 76.9 | 4.2 | 14.0 | 4.9 | 100.0 |
| 전체 | 10,774 | 29.3 | 54.6 | 2.5 | 11.2 | 2.4 | 100.0 |

주 : 보수기준 무응답 (104명)

○ 지역별로 보면, 전남지역이 75.6%가 복지부 인건비지침을 따른다고 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의 경우 0%, 인천이 7.6%의 비율을 보임.

- 인천, 경남, 제주, 서울, 전북의 경우 지자체 기준을 따르는 곳이 60~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법인)자체기준에 따른다는 곳으로는 충북이 61.1%, 대구가 40.7%, 광주 20.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2-8〉 사회복지시설의 보수 기준에 따른 월 평균 보수액

(단위: 명, 원)

| 시설 유형 | 보수기준 | 명 | 월 평균 보수액 | 표준편차 | 기본급 비율 | 평균호봉 |
|-------|--------|-------|-----------|---------|--------|------|
| 생활 시설 | 복지부기준 | 1,501 | 2,090,169 | 503,280 | 65.2 | 8.2 |
| | 지자체기준 | 3,195 | 2,099,856 | 476,694 | 58.4 | 8.4 |
| | 직능단체기준 | - | - | - | - | - |
| | 기관기준 | - | - | - | - | - |
| | 기타 | 38 | 1,577,888 | 347,685 | 58.2 | 5.2 |
| | 계 | 4,734 | 2,092,595 | 486,550 | 60.6 | 8.3 |
| 이용 시설 | 복지부기준 | 1,651 | 2,046,184 | 612,017 | 66.8 | 6.5 |
| | 지자체기준 | 2,592 | 2,043,993 | 575,510 | 58.7 | 7.3 |
| | 직능단체기준 | 266 | 2,158,145 | 619,863 | 51.7 | 8.2 |
| | 기관기준 | 1,207 | 2,048,533 | 671,270 | 54.7 | 7.5 |
| | 기타 | 218 | 2,014,669 | 515,661 | 57.2 | 6.2 |
| | 계 | 5,934 | 2,049,566 | 606,534 | 59.8 | 7.1 |

무응답 : 월 보수액 및 보수기준 무응답 (210명)

○ 본 조사에 응답한 생활시설 중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액은 2,090천원,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따르는 경우의 월보수액은 2,099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타 기준을 따르는 경우는 1,577천원으로 낮게 나타남.

- 이용시설 중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월보수액이 2,046천원,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따르는 경우에는 2,043천원, 직능단체 기준을 따르는 경우에는 2,158천원, 시설 자체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048천원으로 나타남. 기타 기준을 따르는 경우에는 2,014천원으로 전체적으로 보수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인건비 기준에 따른 종사자의 월보수액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복지부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기본급 수준이 높으며, 지자체 기준 준수, 직능단체 기준 준수, 시설 자체기준 준수의 순으로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 지역별 보수기준에 따른 월평균보수액 및 기본급 비율

(단위: 명, 원, %)

| 지역 | 보수기준 | 명 | 월평균보수액 | 표준편차 | 기본급 비율 | 평균 호봉 |
|----|------|-------|-----------|---------|--------|-------|
| 서울 | 복지부 | 736 | 2,200,680 | 601,120 | 47.6 | 8.4 |
| | 지자체 | 1,730 | 2,072,866 | 619,588 | 51.7 | 7.7 |
| | 직능단체 | 211 | 2,238,235 | 641,518 | 51.1 | 8.4 |
| | 기관기준 | 0 | - | - | - | - |
| | 기타 | 91 | 2,018,891 | 508,324 | 50.6 | 5.7 |
| | 계 | 2,768 | 2,117,683 | 616,457 | 50.6 | 7.9 |
| 부산 | 복지부 | 283 | 2,074,233 | 598,211 | 64.3 | 7.5 |
| | 지자체 | 505 | 2,144,009 | 491,906 | 50.6 | 10.6 |
| | 직능단체 | 0 | - | - | - | - |
| | 기관기준 | 151 | 2,164,640 | 717,120 | 57.4 | 7.3 |
| | 기타 | 10 | 2,120,661 | 803,398 | 54.0 | 7.6 |
| | 계 | 949 | 2,126,238 | 569,037 | 55.8 | 9.1 |
| 대구 | 복지부 | 77 | 2,300,777 | 602,056 | 66.8 | 9.1 |
| | 지자체 | 320 | 2,128,375 | 564,623 | 76.3 | 9.2 |
| | 직능단체 | 0 | - | - | - | - |
| | 기관기준 | 273 | 2,194,782 | 743,311 | 51.2 | 8.1 |
| | 기타 | 0 | - | - | - | - |
| | 계 | 670 | 2,175,247 | 648,729 | 65.0 | 8.7 |
| 인천 | 복지부 | 49 | 2,046,049 | 513,372 | 70.7 | 5.5 |
| | 지자체 | 566 | 2,110,214 | 525,209 | 75.4 | 7.3 |
| | 직능단체 | 0 | - | - | - | - |
| | 기관기준 | 31 | 2,000,205 | 547,592 | 64.1 | 5.5 |
| | 기타 | 0 | - | - | - | - |
| | 계 | 646 | 2,100,068 | 525,341 | 74.5 | 7.0 |
| 광주 | 복지부 | 109 | 1,824,581 | 545,645 | 64.0 | 6.3 |
| | 지자체 | 225 | 1,954,722 | 417,044 | 53.1 | 9.0 |
| | 직능단체 | 8 | 2,138,950 | 461,274 | 52.5 | 10.1 |
| | 기관기준 | 93 | 1,881,016 | 423,155 | 55.5 | 8.8 |
| | 기타 | 8 | 1,606,250 | 712,479 | 100.0 | 6.1 |
| | 계 | 443 | 1,904,261 | 463,843 | 57.1 | 8.3 |
| 대전 | 복지부 | 147 | 2,181,401 | 541,428 | 80.0 | 7.9 |
| | 지자체 | 98 | 1,879,745 | 347,960 | 66.3 | 6.2 |
| | 직능단체 | 0 | - | - | - | - |
| | 기관기준 | 60 | 2,149,702 | 676,401 | 44.9 | 9.1 |
| | 기타 | 38 | 1,577,888 | 347,685 | 58.2 | 5.2 |
| | 계 | 343 | 2,022,807 | 541,282 | 67.6 | 7.3 |

〈표 2-9〉 지역별 보수기준에 따른 월평균보수액 및 기본급 비율(계속)

| 지역 | 보수기준 | 명 | 월평균보수액 | 표준편차 | 기본급 비율 | 평균 호봉 |
|----|------|-------|-----------|---------|--------|-------|
| 울산 | 복지부 | 70 | 1,906,645 | 590,502 | 62.5 | 6.6 |
| | 지자체 | 88 | 2,047,264 | 363,331 | 47.6 | 6.1 |
| | 직능단체 | 0 | - | - | - | - |
| | 기관기준 | 16 | 1,965,137 | 735,289 | 64.0 | 6.7 |
| | 기타 | 0 | - | - | - | - |
| | 계 | 174 | 1,983,141 | 506,780 | 55.1 | 6.4 |
| 경기 | 복지부 | 371 | 2,002,854 | 548,632 | 62.6 | 6.0 |
| | 지자체 | 691 | 2,029,332 | 497,343 | 50.1 | 6.9 |
| | 직능단체 | 0 | - | - | - | - |
| | 기관기준 | 128 | 2,094,431 | 724,676 | 65.7 | 7.7 |
| | 기타 | 46 | 2,101,209 | 531,550 | 50.0 | 7.7 |
| | 계 | 1,236 | 2,030,801 | 541,767 | 55.5 | 6.7 |
| 강원 | 복지부 | 274 | 2,007,591 | 468,718 | 73.3 | 7.1 |
| | 지자체 | 191 | 2,091,545 | 303,298 | 55.8 | 9.3 |
| | 직능단체 | 0 | - | - | - | - |
| | 기관기준 | 7 | 2,769,286 | 823,108 | 51.4 | 9.2 |
| | 기타 | 15 | 1,944,051 | 511,096 | 87.4 | . |
| | 계 | 487 | 2,049,509 | 429,828 | 66.6 | 8.0 |
| 충북 | 복지부 | 35 | 1,872,874 | 563,490 | 84.9 | 6.0 |
| | 지자체 | 33 | 1,987,072 | 517,727 | 69.3 | 5.7 |
| | 직능단체 | 0 | - | - | - | - |
| | 기관기준 | 104 | 1,685,044 | 552,162 | 57.6 | 5.9 |
| | 기타 | 0 | - | - | - | - |
| | 계 | 172 | 1,781,212 | 558,979 | 65.4 | 5.9 |
| 충남 | 복지부 | 148 | 1,933,335 | 454,221 | 63.9 | 5.8 |
| | 지자체 | 220 | 2,056,814 | 424,606 | 49.3 | 8.2 |
| | 직능단체 | 0 | - | - | - | - |
| | 기관기준 | 61 | 1,828,236 | 552,438 | 49.7 | 5.5 |
| | 기타 | 16 | 2,019,836 | 360,888 | 45.9 | 5.2 |
| | 계 | 445 | 1,983,084 | 457,971 | 54.1 | 6.9 |
| 전북 | 복지부 | 62 | 1,985,720 | 518,840 | 73.3 | 6.4 |
| | 지자체 | 210 | 1,939,399 | 484,954 | 52.0 | 7.6 |
| | 직능단체 | 8 | 1,693,316 | 368,185 | 58.3 | 8.8 |
| | 기관기준 | 56 | 1,758,859 | 470,889 | 59.1 | 6.4 |
| | 기타 | 7 | 1,802,857 | 251,409 | 48.6 | 5.0 |
| | 계 | 343 | 1,909,770 | 487,773 | 57.1 | 7.2 |
| 전남 | 복지부 | 461 | 1,998,123 | 512,253 | 78.9 | 7.5 |
| | 지자체 | 76 | 2,083,820 | 448,028 | 66.3 | 7.4 |
| | 직능단체 | 33 | 1,828,151 | 400,432 | 53.1 | 6.3 |
| | 기관기준 | 48 | 1,983,893 | 716,183 | 61.9 | 8.1 |
| | 기타 | 0 | - | - | - | - |
| | 계 | 618 | 1,998,480 | 519,505 | 74.6 | 7.5 |

〈표 2-9〉 지역별 보수기준에 따른 월평균보수액 및 기본급 비율(계속)

| 지역 | 보수기준 | 명 | 월평균보수액 | 표준편차 | 기본급 비율 | 평균 호봉 |
|----|------|-----|-----------|---------|--------|-------|
| 경북 | 복지부 | 188 | 2,157,277 | 521,883 | 80.8 | 7.7 |
| | 지자체 | 187 | 2,225,715 | 400,619 | 77.1 | 8.5 |
| | 직능단체 | 0 | - | - | - | - |
| | 기관기준 | 92 | 2,161,322 | 582,566 | 49.0 | 7.6 |
| | 기타 | 18 | 1,985,179 | 361,926 | 85.0 | 5.6 |
| | 계 | 485 | 2,178,044 | 487,649 | 73.5 | 7.9 |
| 경남 | 복지부 | 142 | 1,998,724 | 621,542 | 80.6 | 6.4 |
| | 지자체 | 537 | 2,128,912 | 462,470 | 73.8 | 7.4 |
| | 직능단체 | 0 | - | - | - | - |
| | 기관기준 | 67 | 2,062,859 | 601,748 | 45.6 | 7.6 |
| | 기타 | 0 | - | - | - | - |
| | 계 | 746 | 2,098,199 | 511,615 | 72.6 | 7.3 |
| 제주 | 복지부 | 0 | - | - | - | - |
| | 지자체 | 110 | 1,943,023 | 353,041 | 50.3 | 6.2 |
| | 직능단체 | 6 | 1,801,982 | 278,416 | 52.8 | 5.3 |
| | 기관기준 | 20 | 2,208,150 | 532,665 | 47.1 | 8.2 |
| | 기타 | 7 | 2,133,597 | 556,155 | 44.6 | 6.3 |
| | 계 | 143 | 1,983,515 | 400,395 | 49.7 | 6.4 |

○ 지역별로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른 월평균 보수액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의 경우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른 보수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고,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의 경우 인건비 지급 기준의 차이에 따른 보수수준의 차이가 다소 있게 나타남.

- 지자체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울산, 충북, 전남 지역의 보수수준이 지자체 기준을 준수하나 복지부 기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직능단체 및 시설 자체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남, 제주 지역의 보수수준이 복지부 기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4) 종사 분야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현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전문 영역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치료사, 의사, 상담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등 다양한 전문직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 보수체계에서 이러한 전문영역에 따라 일반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으로 직

5) 종사자의 평균 호봉 고려

종을 구분하여 각 직종별 직급체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도 함.

- 종사 분야에 따른 종사자의 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 시설장의 평균 월보수액은 3,189천원
 - 관리직(사무국장, 부장, 과장 등 / 표에는 확인불가)의 경우 보수수준은 월 2,576천원
 - 의료직이 2,268천원(11호봉)
 - 상담직이 1,961천원(4.5호봉)
 - 생활지도원이 2,012천원(7.2호봉)
 - 재활훈련직이 2,021천원(5.8호봉)
 - 영양사가 2,076천원(7호봉)
 - 취사관리직이 1,892천원(8.3호봉)으로 나타남.

- 이용시설의 경우,
 - 시설장의 월 보수액은 3,313천원
 - 관리직(확인불가)의 경우 2,469천원
 - 사회복지사가 1,812천원(평균 4.7호봉)
 - 의료직이 2,008천원(평균 7.1호봉)
 - 심리치료직이 1,836천원(평균 4.5호봉)
 - 재활훈련직이 1,874천원(평균 6호봉)
 - 특수교사가 1,944천원(5.8호봉)
 - 사무직이 1,841천원(5.7호봉)
 - 영양사가 1,835천원(5호봉)
 - 취사 관리직이 1,793천원(7.5호봉)으로 나타남.

〈표 2-10〉 종사 분야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현황

(단위: 명, 원, %, 개월)

| 시설 유형 | 종사분야 | 명 | 월 평균 보수액 | 표준편차 | 기본급 비율 | 평균 호봉 | 현시설 종사 경력 | 사회 복지 총경력 |
|-------|---------|-------|-----------|---------|--------|-------|-----------|-----------|
| 생활 시설 | 시설장 | 201 | 3,189,580 | 682,496 | 67.9 | 19.8 | 223 | 278 |
| | 사회복지사 | 225 | 2,087,163 | 408,973 | 64.6 | 7.6 | 63 | 81 |
| | 생활지도원 | 2,963 | 2,012,695 | 372,839 | 57.8 | 7.2 | 67 | 82 |
| | 심리치료직 | 8 | 2,330,871 | 727,720 | 52.1 | 10.1 | 121 | 113 |
| | 재활훈련직 | 66 | 2,021,214 | 320,021 | 69.3 | 5.8 | 43 | 64 |
| | 상담직 | 22 | 1,961,219 | 333,701 | 58.3 | 4.5 | 31 | 49 |
| | 의료직 | 211 | 2,268,373 | 392,436 | 68.9 | 11.0 | 79 | 100 |
| | 사무직 | 81 | 1,948,550 | 381,262 | 59.2 | 6.5 | 50 | 76 |
| | 시설취사관리직 | 553 | 1,892,662 | 428,405 | 61.6 | 8.3 | 89 | 94 |
| | 특수교사 | 2 | 1,601,400 | 0 | 82.9 | 1.0 | 6 | 6 |
| | 영양사 | 137 | 2,076,491 | 286,559 | 64.6 | 7.0 | 61 | 72 |
| | 확인불가 | 229 | 2,576,205 | 504,303 | 67.5 | 13.8 | 124 | 159 |
| | 기타 | 21 | 1,860,277 | 435,072 | 67.9 | 7.2 | 69 | 82 |
| | 계 | 4,719 | 2,091,402 | 487,393 | 60.4 | 8.3 | 78 | 96 |
| 이용 시설 | 시설장 | 340 | 3,313,608 | 669,465 | 59.3 | 14.8 | 73 | 167 |
| | 사회복지사 | 2,353 | 1,812,881 | 381,680 | 59.3 | 4.7 | 38 | 47 |
| | 생활지도원 | 19 | 1,825,303 | 571,330 | 71.5 | 6.4 | 52 | 59 |
| | 심리치료직 | 226 | 1,836,092 | 338,031 | 60.0 | 4.5 | 38 | 46 |
| | 재활훈련직 | 67 | 1,874,958 | 493,608 | 70.6 | 6.0 | 53 | 63 |
| | 상담직 | 9 | 1,889,378 | 258,977 | 62.9 | 5.8 | 53 | 45 |
| | 의료직 | 305 | 2,008,942 | 449,825 | 62.4 | 7.1 | 50 | 64 |
| | 사무직 | 384 | 1,841,569 | 377,423 | 58.3 | 5.7 | 49 | 59 |
| | 시설취사관리직 | 657 | 1,793,622 | 463,775 | 64.7 | 7.5 | 61 | 68 |
| | 특수교사 | 64 | 1,944,297 | 388,987 | 55.6 | 5.8 | 51 | 61 |
| | 영양사 | 87 | 1,835,472 | 300,588 | 61.3 | 5.0 | 42 | 52 |
| | 확인불가 | 1,265 | 2,469,822 | 498,975 | 56.1 | 10.4 | 76 | 116 |
| | 기타 | 174 | 1,671,893 | 533,218 | 67.4 | 6.9 | 55 | 61 |
| | 계 | 5,950 | 2,047,437 | 605,738 | 59.7 | 7.1 | 52 | 73 |

주 : 월보수액 및 종사분야 무응답 (209명)

○ 종사자의 근무경력을 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 시설장은 사회복지 총 경력에 평균 20년이며, 심리치료직의 경우는 현재 시설에서의 경력이 평균 10년 이상이며, 관리운영직(확인불가)의 경우도 평균 1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생활지도원의 경우 사회복지 총 경력 8년 정도, 현 시설 종사 경력은 평균 5년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용시설의 경우,

- 시설장의 경력은 사회복지 총 경력 약 13년 이상이며, 현 시설에서는 약 6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직(확인불가)의 경우는 사회복지 총 경력 약 10년 안팎으로, 현 시설 종사 경력은 약 6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사 및 심리치료직의 경우 사회복지 총 경력 4년 정도, 현 시설 종사 경력 약 평균 3년인 것으로 나타나, 이용시설의 타 직종 종사자에 비해 총 경력 및 현 시설 종사 경력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종사경력의 분포는 생활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용시설(복지관)의 경우 시설 운영관리직이 되는 10년 이상의 경력자와 사회복지 관련 총 경력 약 5년 미만인 종사자(사회복지사 및 기타 재활치료, 상담직 등)의 비율이 높은 인력 구조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 사회복지, 심리치료직, 재활훈련직, 상담직, 의료직, 특수교사, 영양사의 경우 전문대학교 졸업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

- 사무직, 시설취사관리직 등 사무관리직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의 비율이 생활시설의 경우 12.3%, 82.5%, 이용시설의 경우 17.9%, 69.8%로 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생활지도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의 비율이 생활시설의 경우 21.5%로 다소 높게 나타남.

-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모두 상담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외에 시설장과 관리직(확인불가), 이용시설의 특수교사의 경우가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 및 업무 유관 자격증의 소지 현황

- 생활시설의 시설취사 및 관리직의 자격증 비소지자 비율이 46.7%로 가장 많음

〈표 2-11〉 종사 분야에 따른 종사자의 학력, 자격증 소지 현황, 주 평균 근무시간

(단위: 명, 원, %, 개월)

| 시설 유형 | 종사분야 | 명 | 학력 | | | | | 자격증 | | | 주 평균근무 시간 |
|-------|-------|-------|------|------|-------|----------|------|-------------|--------|------|-----------|
| | | | 고졸이하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 졸업이상 | 기타 | 사회 복지사 자격증* | 유관 자격증 | 없음 | |
| 생활 시설 | 시설장 | 203 | 12.3 | 12.8 | 36.5 | 38.4 | 0.0 | 95.0 | 3.5 | 1.5 | 46.9 |
| | 사회복지사 | 226 | 4.9 | 35.4 | 46.5 | 12.8 | 0.4 | 96.0 | 2.2 | 1.8 | 43.9 |
| | 생활지도원 | 2,988 | 21.5 | 48.7 | 27.0 | 2.5 | 0.3 | 77.8 | 11.3 | 10.9 | 52.0 |
| | 심리치료직 | 8 | 0.0 | 62.5 | 37.5 | 0.0 | 0.0 | 50.0 | 50.0 | 0.0 | 41.3 |
| | 재활훈련직 | 66 | 3.0 | 25.8 | 53.0 | 18.2 | 0.0 | 97.0 | 3.0 | 0.0 | 49.4 |
| | 상담직 | 22 | 0.0 | 9.1 | 45.5 | 45.5 | 0.0 | 54.5 | 40.9 | 4.5 | 45.3 |
| | 의료직 | 214 | 7.5 | 53.1 | 28.6 | 9.9 | 0.9 | 35.8 | 63.7 | 0.5 | 44.8 |
| | 사무직 | 81 | 12.3 | 39.5 | 42.0 | 3.7 | 2.5 | 70.4 | 18.5 | 11.1 | 47.7 |
| | 시설취사 | 558 | 82.5 | 10.4 | 4.0 | 0.4 | 2.7 | 13.1 | 40.2 | 46.7 | 48.7 |
| | 관리직 | 2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50.0 |
| | 특수교사 | 138 | 0.0 | 42.0 | 52.9 | 5.1 | 0.0 | 27.9 | 72.1 | 0.0 | 46.6 |
| | 영양사 | 234 | 6.4 | 21.4 | 45.7 | 26.5 | 0.0 | 93.1 | 3.4 | 3.4 | 46.6 |
| | 확인불가 | 21 | 52.4 | 9.5 | 28.6 | 4.8 | 4.8 | 19.0 | 47.6 | 33.3 | 43.7 |
| | 기타 | 21 | 52.4 | 9.5 | 28.6 | 4.8 | 4.8 | 19.0 | 47.6 | 33.3 | 43.7 |
| 계 | 4,729 | 25.0 | 39.9 | 28.2 | 6.3 | 0.6 | 69.3 | 18.0 | 12.8 | 50.1 | |
| 이용 시설 | 시설장 | 351 | 2.8 | 4.6 | 24.8 | 67.2 | 0.6 | 90.3 | 2.3 | 7.4 | 42.3 |
| | 사회복지사 | 2,374 | 0.5 | 9.3 | 80.8 | 9.4 | 0.0 | 97.0 | 2.5 | 0.4 | 42.2 |
| | 생활지도원 | 19 | 26.3 | 26.3 | 42.1 | 5.3 | 0.0 | 68.4 | 5.3 | 26.3 | 47.8 |
| | 심리치료직 | 227 | 0.9 | 18.1 | 67.8 | 13.2 | 0.0 | 16.8 | 82.7 | 0.4 | 40.6 |
| | 재활훈련직 | 67 | 0.0 | 13.4 | 76.1 | 10.4 | 0.0 | 36.4 | 63.6 | 0.0 | 40.6 |
| | 상담직 | 9 | 0.0 | 11.1 | 22.2 | 66.7 | 0.0 | 44.4 | 55.6 | 0.0 | 41.1 |
| | 의료직 | 309 | 3.2 | 34.0 | 51.8 | 11.0 | 0.0 | 21.5 | 78.2 | 0.3 | 40.5 |
| | 사무직 | 392 | 17.9 | 31.2 | 46.5 | 3.8 | 0.5 | 44.6 | 36.3 | 19.2 | 41.4 |
| | 시설취사 | 675 | 69.8 | 16.0 | 11.9 | 1.0 | 1.2 | 12.1 | 68.6 | 19.3 | 41.2 |
| | 관리직 | 68 | 0.0 | 4.4 | 73.5 | 22.1 | 0.0 | 13.2 | 86.8 | 0.0 | 41.2 |
| | 특수교사 | 88 | 3.4 | 36.4 | 54.5 | 5.7 | 0.0 | 15.9 | 79.5 | 4.5 | 41.1 |
| | 영양사 | 1,268 | 2.0 | 5.1 | 51.5 | 41.3 | 0.1 | 92.3 | 4.8 | 2.9 | 42.4 |
| | 확인불가 | 174 | 33.9 | 20.1 | 36.2 | 8.6 | 1.1 | 14.0 | 46.5 | 39.5 | 40.4 |
| | 기타 | 174 | 33.9 | 20.1 | 36.2 | 8.6 | 1.1 | 14.0 | 46.5 | 39.5 | 40.4 |
| 계 | 6,016 | 11.1 | 12.7 | 57.4 | 18.6 | 0.2 | 70.6 | 23.5 | 5.9 | 41.8 | |

주 : *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유관자격증 소지자 포함
종사분야 등 무응답 (133명)

○ 생활시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이용시설에 비해 길게 나타났으며, 생활시설 종사자는 종사 분야에 따라 주 평균 근로시간의 편차가 다소 크며, 최소 43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나타남.

- 이용시설의 경우 종사분야에 따른 근로시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43시간으로 나타남.

- 이러한 근로시간의 차이는 생활시설의 경우 일상생활에 대한 케어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생활지도원, 재활훈련직 등의 경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과 생활에 동반하여 근로하므로 장시간 근무하게 되며, 이용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종사 직종에 상관없이 비교적

균등한 근로시간을 보임.

5) 합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첫째, 보수수준의 상향 둘째, 시설유형과 지역별 차이 편차의 최소화 셋째, 종사 전문성과 직무강도에 따른 보수 차별화에 대한 고려 넷째, 채용 확보의 안정성에 대한 고려라고 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는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근무동기를 약화시키고,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숙련된 종사자들이 이직 및 타 직종으로 직종을 변환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보수수준의 상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채용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함.

- 둘째, 조사결과에 의하면, 16호봉 이상의 고호봉자의 경우 기본급 뿐 아니라 수당에서의 차이(직책 수당 등)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의 차이로 인하여 시설유형 및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나는 요인이 되므로, 시설유형과 지역별 차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가 중요함.

- 셋째, 종사 분야의 전문성과 근무강도에 대한 고려의 차별화에 대해서는,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사회복지시설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복지, 근로환경 등의 근로조건과 함께, 임금수준의 상향이 필요함. 때문에 전문성 및 근무강도에 대해서는 기본급 이외의 특별 수당을 통한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의 내용과 서비스 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활용 인력과 직무 내용은 다양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조직의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범위로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시설유형별 지침에 따라 직위, 직급 체계를 갖고 있으나, 동일한 시설유형에 있어서도 직위 및 직급 체계에 차이가 있는 시설이 있으므로 먼저 이러한 직위 직급 체계를 통일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2. 지자체의 보조금 및 법인의 자부담 비율 분석

가. 지역별 인건비 재원의 비교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별로 1인당 인건비 지급액 중 정부보조금, 법인 보조금, 기관 후원금, 이용료, 기타 금액의 구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았음.

〈표 2-12〉 지역별재원별 1인당 인건비 규모의 비교

(단위: 개소, 천원)

| 지역 | 시설수 | 재원 | 평균 | 표준편차 | 지역 | 시설수 | 재원 | 평균 | 표준편차 |
|----|-----|------|--------|--------|----|-----|------|--------|-------|
| 서울 | 117 | 정부보조 | 23,078 | 7,526 | 강원 | 20 | 정부보조 | 24,623 | 8,152 |
| | | 법인보조 | 1,065 | 1,114 | | | 법인보조 | 905 | 1,424 |
| | | 후원금 | 223 | 548 | | | 후원금 | 41 | 129 |
| | | 이용료 | 438 | 1,315 | | | 이용료 | 12 | 44 |
| | | 기타 | 527 | 2,908 | | | 기타 | 562 | 1,813 |
| | | 계 | 25,332 | 7,135 | | | 계 | 26,144 | 8,542 |
| 부산 | 56 | 정부보조 | 23,552 | 7,303 | 충북 | 16 | 정부보조 | 17,327 | 6,670 |
| | | 법인보조 | 959 | 2,158 | | | 법인보조 | 90 | 236 |
| | | 후원금 | 319 | 1,623 | | | 후원금 | 274 | 1,096 |
| | | 이용료 | 604 | 1,725 | | | 이용료 | 249 | 742 |
| | | 기타 | 173 | 474 | | | 기타 | 180 | 521 |
| | | 계 | 25,602 | 8,809 | | | 계 | 18,119 | 7,052 |
| 대구 | 43 | 정부보조 | 26,045 | 9,994 | 충남 | 25 | 정부보조 | 22,571 | 8,565 |
| | | 법인보조 | 638 | 2,078 | | | 법인보조 | 478 | 1,390 |
| | | 후원금 | 493 | 2,235 | | | 후원금 | 10 | 30 |
| | | 이용료 | 379 | 832 | | | 이용료 | 230 | 529 |
| | | 기타 | 822 | 4,049 | | | 기타 | 263 | 1,025 |
| | | 계 | 28,384 | 10,995 | | | 계 | 23,552 | 8,145 |
| 인천 | 31 | 정부보조 | 24,192 | 8,760 | 전북 | 25 | 정부보조 | 19,004 | 7,938 |
| | | 법인보조 | 345 | 784 | | | 법인보조 | 844 | 1,903 |
| | | 후원금 | 127 | 336 | | | 후원금 | 321 | 914 |
| | | 이용료 | 309 | 1,496 | | | 이용료 | 519 | 1,370 |
| | | 기타 | 31 | 140 | | | 기타 | 421 | 852 |
| | | 계 | 25,005 | 8,325 | | | 계 | 21,108 | 7,749 |

〈표 2-12〉 지역별·재원별 1인당 인건비 규모의 비교(계속)

| 지역 | 시설수 | 재원 | 평균 | 표준편차 | 지역 | 시설수 | 재원 | 평균 | 표준편차 |
|----|-----|------|--------|-------|----------|-----|------|--------|-------|
| 광주 | 26 | 정부보조 | 21,471 | 8,447 | 전남 | 40 | 정부보조 | 26,074 | 6,744 |
| | | 법인보조 | 521 | 1,124 | | | 법인보조 | 392 | 726 |
| | | 후원금 | 467 | 1,374 | | | 후원금 | 101 | 448 |
| | | 이용료 | 127 | 432 | | | 이용료 | 149 | 520 |
| | | 기타 | 54 | 252 | | | 기타 | 148 | 443 |
| | | 계 | 22,640 | 8,152 | | | 계 | 26,863 | 5,958 |
| 대전 | 21 | 정부보조 | 26,617 | 5,399 | 경북 | 30 | 정부보조 | 22,480 | 8,695 |
| | | 법인보조 | 1,106 | 2,043 | | | 법인보조 | 970 | 1,760 |
| | | 후원금 | 571 | 2,064 | | | 후원금 | 414 | 1,026 |
| | | 이용료 | 43 | 198 | | | 이용료 | 724 | 1,692 |
| | | 기타 | 62 | 183 | | | 기타 | 678 | 1,492 |
| | | 계 | 28,399 | 5,885 | | | 계 | 25,267 | 8,223 |
| 울산 | 10 | 정부보조 | 21,491 | 8,901 | 경남 | 39 | 정부보조 | 26,306 | 8,961 |
| | | 법인보조 | 501 | 878 | | | 법인보조 | 879 | 3,994 |
| | | 후원금 | 113 | 243 | | | 후원금 | 171 | 525 |
| | | 이용료 | 490 | 956 | | | 이용료 | 129 | 402 |
| | | 기타 | 2 | 5 | | | 기타 | 374 | 1,378 |
| | | 계 | 22,597 | 8,884 | | | 계 | 27,859 | 9,039 |
| 경기 | 67 | 정부보조 | 21,278 | 7,284 | 제주 | 9 | 정부보조 | 24,970 | 7,678 |
| | | 법인보조 | 1,115 | 2,226 | | | 법인보조 | 46 | 88 |
| | | 후원금 | 102 | 415 | | | 후원금 | 752 | 888 |
| | | 이용료 | 711 | 1,702 | | | 이용료 | 87 | 262 |
| | | 기타 | 141 | 580 | | | 기타 | 1 | 3 |
| | | 계 | 23,350 | 6,999 | | | 계 | 25,856 | 7,224 |
| | | | | | 전국 평균 | 575 | 정부보조 | 23,346 | 8,141 |
| | | | | | | | 법인보조 | 809 | 1,862 |
| | | | | | | | 후원금 | 251 | 1,061 |
| | | | | | | | 이용료 | 390 | 1,219 |
| | | | | | | | 기타 | 334 | 1,864 |
| | | | | | | | 계 | 25,130 | 8,188 |

○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인당 인건비 평균 금액은 연간 25,130천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국고보조는 23,346천원이었음. 기관별 인건비는 대개 연간 18,000천원에서 28,4000천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자체 중 대전, 대구, 경남 지역의 인건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각각 28,399천원, 28,384천원, 27,859천원이었고, 충북 및 전북지역의 1인당 인건비 규모는 각각 18,119천원, 21,108천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모든 지역에서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전, 경남, 전남 대구 지역은 1인당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이 각각 26,617천원, 26,306천원, 26,074천원, 26,045천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 인건비가 낮은 충북 및 전북 지역은 1인당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의 금액이 각각 17,327천원, 19,004천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나. 시설종류별 인건비 재원의 비율

○ 생활시설은 이용시설에 비해 1인당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 크고, 이용시설의 경우 국고보조금 외의 재원, 즉 법인보조금이나 후원금, 이용료 수입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생활시설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고보조금의 경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편차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기타 재원의 경우 편차가 크게 나타나 법인지원금이나 후원금, 이용료 등의 재원은 기관별로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2-13> 인건비 재원의 분포

(단위: 개소, 천원)

| | | 시설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생활시설 | 정부보조 | 201 | 28,300 | 7,238 | 1,051 | 49,665 |
| | 법인보조 | | 617 | 1,624 | 0 | 13,068 |
| | 후원금 | | 163 | 601 | 0 | 5,271 |
| | 이용료 | | 180 | 1,190 | 0 | 11,438 |
| | 기타 | | 83 | 545 | 0 | 6,189 |
| | 계 | | 29,342 | 6,766 | 1,156 | 49,665 |
| 이용시설 | 정부보조 | 374 | 20,683 | 7,319 | 478 | 53,452 |
| | 법인보조 | | 912 | 1,973 | 0 | 25,000 |
| | 후원금 | | 299 | 1,238 | 0 | 14,572 |
| | 이용료 | | 503 | 1,221 | 0 | 9,416 |
| | 기타 | | 469 | 2,266 | 0 | 30,884 |
| | 계 | | 22,866 | 7,996 | 1,037 | 71,763 |

주: 본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조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직원에 대해 2009년도 결산서 기준 인건비를 작성한 것으로,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및 강사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용시설이 생활시설에 비해 1인당 인건비 총액이 낮게 나타남.

- 생활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은 인건비 중 국가보조의 비율이 낮았고, 아동복지시

설의 경우 인건비 중 국가보조의 비율이 높았음.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유료 양로시설이 존재하여 이용료 수입으로 인건비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재원의 마련이 어려워 국고보조 이외에는 대다수 법인보조만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으로 보임.

〈표 2-14〉 시설종류별 인건비 자원 비율

(단위: 개소, %)

| 생활시설 | | | | | 이용시설 | | | | |
|-------------|-----|------|-------|-------|-------------|-----|------|-------|-------|
| 종류 | 시설수 | 자원 | 평균 | 표준편차 | 종류 | 시설수 | 자원 | 평균 | 표준편차 |
| 노인 복지시설 | 22 | 정부보조 | 85.22 | 25.29 | 종합사회 복지관 | 190 | 정부보조 | 88.19 | 16.10 |
| | | 법인보조 | 4.30 | 7.34 | | | 법인보조 | 4.66 | 10.33 |
| | | 후원금 | 0.86 | 2.04 | | | 후원금 | 1.94 | 5.08 |
| | | 이용료 | 8.58 | 20.22 | | | 이용료 | 2.56 | 6.52 |
| | | 기타 | 1.05 | 3.01 | | | 기타 | 2.69 | 10.16 |
| 아동 복지시설 | 130 | 정부보조 | 97.06 | 7.09 | 노인 복지관 | 112 | 정부보조 | 93.63 | 9.81 |
| | | 법인보조 | 2.15 | 5.35 | | | 법인보조 | 4.48 | 8.45 |
| | | 후원금 | 0.63 | 2.59 | | | 후원금 | 0.15 | 0.70 |
| | | 이용료 | 0.01 | 0.15 | | | 이용료 | 1.25 | 4.57 |
| | | 기타 | 0.28 | 1.92 | | | 기타 | 0.48 | 1.98 |
| 장애인복 지시설 | 50 | 정부보조 | 96.29 | 14.22 | 장애인 복지관 | 72 | 정부보조 | 92.56 | 6.99 |
| | | 법인보조 | 1.09 | 2.55 | | | 법인보조 | 2.06 | 4.08 |
| | | 후원금 | 0.37 | 0.95 | | | 후원금 | 0.52 | 1.55 |
| | | 이용료 | 0.19 | 0.80 | | | 이용료 | 3.10 | 5.35 |
| | | 기타 | 0.07 | 0.29 | | | 기타 | 1.75 | 3.11 |
| | | | | | 전국평균 | 576 | 정부보조 | 92.40 | 13.23 |
| | | | | | | | 법인보조 | 3.41 | 7.86 |
| | | | | | | | 후원금 | 0.94 | 3.33 |
| | | | | | | | 이용료 | 1.79 | 6.23 |
| | | | | | | | 기타 | 1.30 | 6.17 |

○ 이용시설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 유형의 시설들에 비해 인건비 중 정부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시설별 자원의 비율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에 비해 이용료 수입으로 인건비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법인보조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다. 운영주체별 인건비 재원의 비율

○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유형별로 인건비 재원의 비율을 알아본 결과

〈표 2-15〉 운영주체별 인건비 재원의 비율

(단위: 개소, %)

| 운영주체 | 시설수 | 재원 | 평균 | 표준편차 | 운영주체 | 시설수 | 재원 | 평균 | 표준편차 |
|--------|-----|------|-------|-------|----------|-----|------|--------|-------|
| 사회복지법인 | 452 | 정부보조 | 92.89 | 12.09 | 종교법인 | 7 | 정부보조 | 89.43 | 13.62 |
| | | 법인보조 | 3.33 | 7.44 | | | 법인보조 | 2.82 | 1.88 |
| | | 후원금 | 1.00 | 3.55 | | | 후원금 | 0.07 | 0.18 |
| | | 이용료 | 1.57 | 4.94 | | | 이용료 | 6.22 | 13.68 |
| | | 기타 | 1.05 | 5.14 | | | 기타 | 1.46 | 3.47 |
| 재단법인 | 50 | 정부보조 | 88.32 | 19.00 | 의료법인 | 1 | 정부보조 | 100.00 | . |
| | | 법인보조 | 4.57 | 10.03 | | | 법인보조 | 0.00 | . |
| | | 후원금 | 0.67 | 2.04 | | | 후원금 | 0.00 | . |
| | | 이용료 | 2.44 | 8.60 | | | 이용료 | 0.00 | . |
| | | 기타 | 4.03 | 13.63 | | | 기타 | 0.00 | . |
| 학교법인 | 23 | 정부보조 | 91.48 | 10.15 | 국립 및 지자체 | 2 | 정부보조 | 96.15 | 5.44 |
| | | 법인보조 | 3.48 | 3.96 | | | 법인보조 | 3.72 | 5.25 |
| | | 후원금 | 1.16 | 3.20 | | | 후원금 | 0.13 | 0.19 |
| | | 이용료 | 2.12 | 4.73 | | | 이용료 | 0.00 | 0.00 |
| | | 기타 | 1.76 | 3.49 | | | 기타 | 0.00 | 0.00 |
| 사단법인 | 37 | 정부보조 | 94.23 | 12.23 | 기타 | 4 | 정부보조 | 77.45 | 45.11 |
| | | 법인보조 | 3.07 | 11.77 | | | 법인보조 | 3.18 | 6.36 |
| | | 후원금 | 0.77 | 2.77 | | | 후원금 | 0.00 | 0.00 |
| | | 이용료 | 1.16 | 2.55 | | | 이용료 | 19.37 | 38.74 |
| | | 기타 | 0.77 | 2.31 | | | 기타 | 0.00 | 0.00 |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인건비 중 법인의 보조금 비율은 평균 3.33%로 나타남.

- 인건비 중 법인보조금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운영주체는 재단법인으로, 인건비 중 법인보조금 비율이 4.57%였으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보조금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설의 운영주체별로 인건비 중 법인보조금의 비율이 달라지고, 따라서 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법인의 역할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금까지 각 시설유형별 및 지역별 기관의 인건비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첫째,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들은 종사자 인건비를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액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둘째, 생활시설이 이용시설에 비해 활용하고 있는 인건비 재원이 한정적이었음. 즉, 생활시설에 비해 이용시설이 국고보조금 외의 다른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생활시설이 이용시설에 비해 인건비의 변화에 있어 국고보조금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셋째,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의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더불어 국고보조를 제외한 다른 재원들의 경우 편차 역시 크게 나타남. 이는 각 시설별로 국고보조금 이외의 인건비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부담능력 및 후원활동 등 시설 역량으로 인한 인건비의 차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설별 종사자 급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넷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별로 인건비 중 법인보조금의 비율에 차이가 있었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재원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있어 운영주체의 역량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3. 가이드라인 준수율

가. 가이드라인 준수율

○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기관의 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음.

- 기관의 인건비 지급에 있어 활용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는 지자체 기준이 가장 많았고, 약 30%의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음.

〈표 2-16〉 기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용분포

| | 빈도 | 백분율 |
|------|-----|--------|
| 복지부 | 180 | 31.36 |
| 지자체 | 252 | 43.90 |
| 직능단체 | 15 | 2.61 |
| 기관기준 | 108 | 18.82 |
| 기타 | 19 | 3.31 |
| 계 | 574 | 100.00 |

(단위: 개소, %)

나. 지역별 가이드라인 준수율

○ 인건비 지급에 활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역별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17〉 지역별 활용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종류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
|------|-------------|------------|------------|------------|------------|------------|------------|------------|-------------|
| 복지부 | 28(23.73) | 22(39.29) | 5(11.62) | 3(10.00) | 9(34.62) | 10(47.62) | 4(40.00) | 18(27.27) | |
| 지자체 | 75(63.56) | 18(32.14) | 16(37.21) | 24(80.00) | 10(38.46) | 4(19.05) | 4(40.00) | 37(56.06) | |
| 직능단체 | 12(10.17) | 0(0.00) | 0(0.00) | 0(0.00) | 1(3.85) | 0(0.00) | 0(0.00) | 0(0.00) | |
| 기관기준 | 0(0.00) | 14(25.00) | 22(51.16) | 3(10.00) | 5(19.23) | 6(28.57) | 2(20.00) | 8(12.12) | |
| 기타 | 3(2.54) | 2(3.57) | 0(0.00) | 0(0.00) | 1(3.85) | 1(4.76) | 0(0.00) | 3(4.55) | |
| 계 | 118(100.00) | 56(100.00) | 43(100.00) | 30(100.00) | 26(100.00) | 21(100.00) | 10(100.00) | 66(100.00) | |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복지부 | 14(70.00) | 4(25.00) | 7(28.00) | 6(24.00) | 27(67.5) | 14(46.67) | 9(23.08) | 0(0.00) | 180(31.36) |
| 지자체 | 4(20.00) | 4(25.00) | 8(32.00) | 12(48.00) | 3(7.50) | 6(20.00) | 23(58.97) | 4(44.44) | 252(43.90) |
| 직능단체 | 0(0.00) | 0(0.00) | 0(0.00) | 0(0.00) | 1(2.50) | 0(0.00) | 0(0.00) | 1(11.11) | 15(2.61) |
| 기관기준 | 1(5.00) | 8(50.00) | 7(28.00) | 6(24.00) | 7(17.50) | 8(26.67) | 7(17.95) | 4(44.44) | 108(18.82) |
| 기타 | 1(5.00) | 0(0.00) | 3(12.00) | 1(4.00) | 2(5.00) | 2(6.67) | 0(0.00) | 0(0.00) | 19(3.31) |
| 계 | 20(100.00) | 16(100.00) | 25(100.00) | 25(100.00) | 40(100.00) | 30(100.00) | 39(100.00) | 9(100.00) | 574(100.00) |

(단위: 개소, %)

- 강원도의 경우가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남, 대전, 경북의 순서를 보임. 또한 서울, 경기, 경남, 인천의 경우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아닌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르고 있음.

-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에 대해 살펴본 결과,
 - 첫째,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약 30% 정도이며, 각 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
 - 둘째, 지역별로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을 살펴본 결과 강원도, 전남, 대전, 경북 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서울, 경기, 경남, 인천의 경우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보다 준수하고 있음. 또한 지방재정자립도와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음.
 - 셋째, 시설별로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살펴본 결과, 생활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이용시설 중 노인복지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시설이 이용시설에 비해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더 높음.
 - 넷째, 시설 종사자 수와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살펴본 결과 종사자 수가 많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 대개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활용하고 있었고,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기관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4. 종사자 복지수당의 지급

가. 종사자 복지수당의 지급여부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급여와 별도로 종사자 복지수당(보전수당)을 지급받도록 명시되어 있음.

〈표 2-18〉 종사자 복지수당의 지급여부

| | | (단위: 개소, %) | |
|----|-------------------|-------------|--------|
| | | 빈도 | 백분율 |
| 있음 | 광역자치단체 | 278 | 48.60 |
| | 기초자치단체 | 163 | 28.50 |
|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 | 11 | 1.92 |
| | 계 | 452 | 79.02 |
| 없음 | | 120 | 20.98 |
| 계 | | 572 | 100.00 |

-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조사대상 기관 중 79.02%로 다수의 기관이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들 기관 중 대부분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종사자 복지수당의 재원을 지급받고 있었음.

-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표 2-19〉 지역별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여부

(단위: 개소, %)

| | 있음 | | | | 없음 | 계 |
|----|-----------|-----------|------------------|------------|-----------|-------------|
|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동부담 | 계 | | |
| 서울 | 51(18.35) | 30(18.40) | 0(0.00) | 81(69.23) | 36(30.77) | 117(100.00) |
| 부산 | 37(13.31) | 15(9.20) | 0(0.00) | 52(92.86) | 4(7.14) | 56(100.00) |
| 대구 | 20(7.19) | 2(1.23) | 0(0.00) | 22(51.16) | 21(48.84) | 43(100.00) |
| 인천 | 23(8.27) | 4(2.45) | 0(0.00) | 27(87.10) | 4(12.90) | 31(100.00) |
| 광주 | 17(6.12) | 2(1.23) | 0(0.00) | 19(73.08) | 7(26.92) | 26(100.00) |
| 대전 | 7(2.52) | 10(6.13) | 1(9.09) | 18(90.00) | 2(10.00) | 20(100.00) |
| 울산 | 8(2.88) | 2(1.23) | 0(0.00) | 10(100.00) | 0(0.00) | 10(100.00) |
| 경기 | 20(7.19) | 31(19.02) | 0(0.00) | 51(77.27) | 15(22.73) | 66(100.00) |
| 강원 | 5(1.80) | 13(7.98) | 1(9.09) | 19(95.00) | 1(5.00) | 20(100.00) |
| 충북 | 1(0.36) | 8(4.91) | 1(9.09) | 10(62.50) | 6(37.50) | 16(100.00) |
| 충남 | 13(4.68) | 6(3.68) | 3(27.27) | 22(88.00) | 3(12.00) | 25(100.00) |
| 전북 | 11(3.96) | 10(6.13) | 0(0.00) | 21(84.00) | 4(16.00) | 25(100.00) |
| 전남 | 25(8.99) | 5(3.07) | 0(0.00) | 30(76.92) | 9(23.08) | 39(100.00) |
| 경북 | 18(6.47) | 7(4.29) | 3(27.27) | 28(93.33) | 2(6.67) | 30(100.00) |
| 경남 | 22(7.91) | 11(6.75) | 2(18.18) | 35(89.74) | 4(10.26) | 39(100.00) |
| 제주 | 0(0.00) | 7(4.29) | 0(0.00) | 7(77.78) | 2(22.22) | 9(100.00) |

- 부산, 울산, 강원, 경북 등의 지역에서는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수당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었는데,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의 경우처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곳도 존재함.

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여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음.

〈표 2-20〉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 | (단위: 개소, %) | |
|----|--------|-------------|--------|
| | | 빈도 | 백분율 |
| 있음 | 광역자치단체 | 87 | 15.40 |
| | 기초자치단체 | 66 | 11.68 |
| | 계 | 153 | 27.08 |
| 없음 | | 412 | 72.92 |
| 계 | | 565 | 100.00 |

- 연장근로수당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1〉 지역별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주체

| | 있음 | | | 없음 | 계 |
|----|-----------|-----------|-----------|------------|-------------|
|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계 | | |
| 서울 | 18(20.69) | 9(13.64) | 27(23.28) | 89(76.72) | 116(100.00) |
| 부산 | 17(19.54) | 4(6.06) | 21(37.50) | 35(62.50) | 56(100.00) |
| 대구 | 10(11.49) | 2(3.03) | 12(27.91) | 31(72.09) | 43(100.00) |
| 인천 | 9(10.34) | 1(1.52) | 10(32.26) | 21(67.74) | 31(100.00) |
| 광주 | 4(4.60) | 3(4.55) | 7(26.92) | 19(73.08) | 26(100.00) |
| 대전 | 5(5.75) | 2(3.03) | 7(33.33) | 14(66.67) | 21(100.00) |
| 울산 | 2(3.30) | 2(3.03) | 4(40.00) | 6(60.00) | 10(100.00) |
| 경기 | 6(6.90) | 16(24.24) | 22(33.85) | 43(66.15) | 65(100.00) |
| 강원 | 0(0.00) | 6(9.09) | 6(33.33) | 12(66.67) | 18(100.00) |
| 충북 | 0(0.00) | 1(1.52) | 1(6.67) | 14(93.33) | 15(100.00) |
| 충남 | 1(1.15) | 1(1.52) | 2(8.00) | 23(92.00) | 25(100.00) |
| 전북 | 0(0.00) | 0(0.00) | 0(0.00) | 24(100.00) | 24(100.00) |
| 전남 | 3(3.45) | 5(7.58) | 8(21.05) | 30(78.95) | 38(100.00) |
| 경북 | 5(5.75) | 4(6.06) | 9(30.00) | 21(70.00) | 30(100.00) |
| 경남 | 7(8.05) | 9(13.64) | 16(42.11) | 2(5.26) | 38(100.00) |
| 제주 | 0(0.00) | 1(1.52) | 1(11.11) | 8(88.89) | 9(100.00) |

- 대다수의 시설들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부산, 대전, 경남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기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서울과 부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를 주로 부담하고 있고, 경기의 경우 기

초차차단체가 이를 주로 부담하고 있었음.

5. 보수인상률

○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공무원의 보수가 동결되고,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도 동결된 곳이 많았음. 아래에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이후 실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인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함.

-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수의 인상은 2007년의 경우 평균 3.28%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최근 2008년과 2009년에는 보수인상률이 낮음.

〈표 2-22〉 보수인상률

(단위: 개소, %)

| | 기관수 | 평균 | 표준편차 |
|------|-----|------|------|
| 2007 | 520 | 3.28 | 2.66 |
| 2008 | 531 | 1.57 | 2.68 |
| 2009 | 520 | 1.16 | 3.18 |

〈표 2-23〉 지역별 보수 인상률

(단위: 개소, %)

| | 2007 | | | 2008 | | | 2009 | | |
|----|------|------|------|------|------|------|------|------|------|
| | 기관수 | 평균 | 표준편차 | 기관수 | 평균 | 표준편차 | 기관수 | 평균 | 표준편차 |
| 서울 | 108 | 3.69 | 2.73 | 114 | 0.25 | 1.47 | 113 | 0.91 | 1.75 |
| 부산 | 47 | 3.53 | 2.02 | 51 | 1.18 | 2.27 | 52 | 0.94 | 3.99 |
| 대구 | 43 | 2.32 | 1.87 | 42 | 2.76 | 2.00 | 41 | 1.82 | 1.82 |
| 인천 | 26 | 3.15 | 2.54 | 26 | 2.08 | 2.40 | 26 | 1.77 | 3.10 |
| 광주 | 22 | 2.28 | 2.98 | 24 | 1.67 | 2.72 | 15 | 4.50 | 3.57 |
| 대전 | 18 | 4.69 | 2.61 | 16 | 4.31 | 3.75 | 17 | 0.32 | 2.98 |
| 울산 | 10 | 1.91 | 2.51 | 10 | 0.75 | 1.27 | 8 | 1.00 | 1.41 |
| 경기 | 63 | 2.83 | 2.79 | 63 | 1.23 | 2.38 | 64 | 1.46 | 2.58 |
| 강원 | 17 | 3.90 | 3.12 | 17 | 2.48 | 2.57 | 19 | 1.56 | 2.95 |
| 충북 | 14 | 3.77 | 4.20 | 14 | 2.78 | 2.07 | 15 | 2.00 | 3.22 |
| 충남 | 24 | 3.41 | 2.98 | 24 | 1.09 | 1.93 | 25 | 1.35 | 2.60 |
| 전북 | 22 | 2.50 | 2.38 | 25 | 1.35 | 5.21 | 19 | 2.89 | 2.49 |
| 전남 | 35 | 3.78 | 2.09 | 35 | 1.80 | 2.53 | 37 | 1.22 | 2.54 |
| 경북 | 25 | 3.39 | 3.44 | 24 | 2.56 | 3.81 | 25 | 0.76 | 1.82 |
| 경남 | 37 | 3.41 | 2.20 | 37 | 2.81 | 2.62 | 35 | 1.53 | 3.11 |
| 제주 | 9 | 3.21 | 2.03 | 9 | 1.59 | 2.14 | 9 | 0.66 | 1.97 |

- 대전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2007년 및 2008년 보수인상률이 높게 나타났고, 강원도의 경우 2007년 보수인상률이 높게 나타남.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해 다수 기관들의 임금을 동결한 까닭에 보수인상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광주, 충북 및 전북 지역은 인건비의 증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

〈표 2-24〉 시도별 가이드라인 조정현황

(단위: %)

| 시도명 | 복지부 권고 | | | | | 2009년 | 2010년 |
|---------|--------|-------|-------|------------------|-------|-----------------|--------------------------|
| | 소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
| 복지부 권고안 | 24.5 | 5 | 6 | 6.5 | 7 | 연봉제전환 (3%인상) | 연봉차등인상 (1.6%) |
| 시도평균 | 21.9 | 4.9 | 5.7 | 6.4 | 4.9 | | |
| 서울 | 29 | 5 | 5 | 5 | 6 | 동결 | 동결 |
| 부산 | 21 | 5 | 6 | 6.5 | 3.5 | 동결 | 동결 |
| 대구 | 21 | 5 | 6 | 6.5 | 3.5 | 3 | 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로 조정 |
| 인천 | 20.2 | 5 | 3.7 | 6.5 | 5 | 연봉제 (5%인상) | 동결 |
| 광주 | 19 | 5 | 6 | 6.5 | 1.5 | 동결 | 연봉차등인상 (11.9%) |
| 대전 | 24.5 | 5 | 6 | 6.5 | 7 | 동결 | 미정 (5월 이후) |
| 울산 | 24.5 | 5 | 6 | 6.5 | 7 | 동결 | 5 |
| 경기 | 21 | 5 | 6 | 6.5 | 3.5 | 동결 | 동결 |
| 강원 | 24 | 4.1 | 6.4 | 6.5 | 7 | 연봉제 (3%인상) | 연봉차등인상 (1.6%) |
| 충북 | 22.5 | 5 | 6 | 6.5 | 5 | 동결 | 3%인상 (7.1부터) |
| 충남 | 24.5 | 5 | 6 | 6.5 | 7 | 동결 | 동결 |
| 전북 | 19.5 | 3 | 5 | 상반기동결 하반기6.5% | 5 | 3 | 3 |
| 전남 | 21 | 5 | 6 | 6.5 | 3.5 | 동결 | 시군이첩 |
| 경북 | 24.5 | 5 | 6 | 6.5 | 7 | 연봉제 (3%인상) | 시설별 별도 적용 |
| 경남 | 21 | 6 | 5 | 6.5 | 3.5 | 연봉제 (3%인상) | 동결 |
| 제주 | 21 | 5 | 6 | 6.5 | 3.5 | 동결 | 동결 |

- 사회복지시설 담당자가 응답한 각 지역별 보수인상률과는 달리 실제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2009년 이전에는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었고, 2009년 및 2010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대다수의 지역이 공무원의 보수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동결을 선택함.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간담회

결과, 비록 2011년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전이었지만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는 201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증액을 계획하고 있었음. 특히 대구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도 존재함.

○ 시사점

- 지역별로 인건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들은 지방의 재정자립도와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역시 지방의 재정자립도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시설의 경우 이용시설에 비해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용시설의 경우 법인보조금과 이용료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은 인건비에 있어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생활시설에 비해 이용시설이 인건비 재원이 보다 다양하지만,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음.

-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약 30% 수준으로, 각 시설들은 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었고,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과 지방재정자립도와의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는 미미함.

- 시설들은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를 위한 재원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있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음.

- 이와 더불어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인상률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최근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한 보수 동결 때문인 것으로 보임.

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인식 조사

○ 현 보수체계의 문제점

〈표 2-25〉 현 보수체계의 문제점

(단위: 개소,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 | 184(32.45) | 32(5.76) | 29(5.37) |
|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경력직 직원 채용의 어려움 | 38(6.70) | 78(14.03) | 61(11.3) |
|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직원 승진의 제한 | 21(3.70) | 51(9.17) | 66(12.22) |
| 보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한 월급지급의 지체 | 5(0.88) | 6(1.08) | 17(3.15) |
| 인건비 부족을 인한 직원 사기 저하 | 94(16.58) | 108(19.42) | 64(11.85) |
| 인건비 부족분 충당으로 인한 사업비의 부족 | 22(3.88) | 54(9.71) | 45(8.33) |
|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한 직원의 이직률 증가 | 124(21.87) | 98(17.63) | 71(13.15) |
|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하 서비스 질 저하 | 47(8.29) | 88(15.83) | 81(15.00) |
| 추가근무수당 등의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제한 | 12(2.12) | 37(6.65) | 99(18.33) |
| 기타 | 20(3.53) | 4(0.72) | 7(1.30) |
| 계 | 567(100.00) | 556(100.00) | 540(100.00) |

- 응답기관의 32.45%는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낮은 보수수준으로 인한 직원 이직률의 증가,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직원의 사기 저하를 문제점으로 꼽음.

○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표 2-26〉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단위: 개소, %)

| | 빈도 | 백분율 |
|--|-----|--------|
| 직렬간 봉급 차이가 부적절함 | 19 | 3.36 |
| 직급간 봉급 차이가 부적절함 | 53 | 9.36 |
| 직급 내 호봉인상률이 부적절함 | 78 | 13.78 |
| 종사시설 유형별 보수 격차가 부적절함 | 102 | 18.02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 277 | 48.94 |
| 기타 | 37 | 6.54 |
| 계 | 566 | 100.00 |

- 현재 가이드라인에 대해 대다수의 시설들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
 - 대다수 시설들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준수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보조금 지급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2-27〉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

(단위: 개수,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 200(35.27) | 118(21.26) | 60(11.01) |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방식의 변경 | 97(17.11) | 97(17.48) | 65(11.93) |
|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 | 57(10.05) | 102(18.38) | 120(22.02) |
|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추가지원 의무화 | 16(2.82) | 33(5.95) | 40(7.34)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제회의 설립 및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 20(3.53) | 63(11.35) | 85(15.6) |
| 보조금 지급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전환 | 140(24.69) | 100(18.02) | 87(15.96) |
|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와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23(4.06) | 39(7.03) | 75(13.76) |
| 기타 | 14(2.47) | 3(0.54) | 13(2.39) |
| 계 | 567(100.00) | 555(100.00) | 545(100.00)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주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 수행
 -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 2-2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

(단위: 개수, %)

| | 시설수 | 백분율 |
|-------------|-----|--------|
| 중앙정부 | 473 | 83.72 |
| 지방정부 | 67 | 11.86 |
| 시설운영법인 | 8 | 1.42 |
| 사회복지관련 직능단체 | 15 | 2.65 |
| 기타 | 2 | 0.35 |
| 계 | 565 | 100.00 |

7. 사회복지사 인식 조사

1) 보수수준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대한 인식

○ 월급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3.5%, 매우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2.4%로 전체 응답의 75%정도를 차지함.

〈표 2-29〉 보수수준 공정성에 대한 인식

| | 매우 공정하다 | 공정하다 | 보통이다 | 공정하지 않다 | 매우 공정하지 않다 | 전체 |
|---|------------|------|------|------------|---------------|-------|
| 명 | 6 | 59 | 460 | 946 | 704 | 2,175 |
| % | 0.3 | 2.7 | 21.1 | 43.5 | 32.4 | 100.0 |

주: 결측값=23

○ 월급이 타시설과 비교하였을 때 많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69.9%, 많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4.6%,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4%로 나타남.

〈표 2-30〉 타 시설 비교시 본인 보수 수준이 많다고 평가하는지 대한 의견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명 | 9 | 92 | 552 | 915 | 603 | 2,171 |
| % | 0.4 | 4.2 | 25.4 | 42.1 | 27.8 | 100.0 |

주: 결측값=27

○ 월급이 타 직종과 비교하였을 때 많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96.2%로 나타남.

〈표 2-31〉 타 직종 같은 직급과의 비교에서 본인 보수 수준이 많다고 평가하는지 의견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 |
|---|-----------|-----|------|-----------|--------------|------|
| 명 | 3 | 7 | 72 | 576 | 1515 | 2173 |
| % | 0.1 | 0.3 | 3.3 | 26.5 | 69.7 | 100 |

주: 결측값=25

○ 타 시설 동일 직급자와 비교하여 본인의 월보수액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시설유형 및 직위별로 살펴보면, 본인 월보수액이 더 낮다 : 보통 : 더 많다 = 7 : 2.5 : 0.5의 비율로 나타났음.

〈표 2-32〉 타시설 동일직급자의 보수에 비해 본인 보수가 많다고 생각하는가 (시설유형, 직위별)

(단위: 명, %)

| 구 분 | | 명 | 타 복지시설 동일 직급자의 보수에 비해 본인 보수가 많다고 생각하는가 | | | |
|----------|----------------|-------|--|------|--------|-------|
| | |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계 |
| 시설 유형 | 종합사회복지관 | 406 | 8.9 | 33.0 | 58.1 | 100.0 |
| | 부랑인노숙인시설 | 41 | 0.0 | 39.0 | 61.0 | 100.0 |
| | 노인복지시설 | 482 | 3.5 | 29.0 | 67.4 | 100.0 |
| | 이동복지시설 | 185 | 9.2 | 23.8 | 67.0 | 100.0 |
| | 장애인복지시설 | 543 | 3.9 | 28.4 | 67.8 | 100.0 |
| | 정신보건시설 | 77 | 3.9 | 29.9 | 66.2 | 100.0 |
| | 자활후견기관 | 91 | 0.0 | 8.8 | 91.2 | 100.0 |
| | 모부자복지시설 | 34 | 5.9 | 20.6 | 73.5 | 100.0 |
| | 성매매피해시설 | 17 | 0.0 | 17.6 | 82.4 | 100.0 |
|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 43 | 2.3 | 4.7 | 93.0 | 100.0 |
| | 지역아동센터 | 252 | 1.6 | 8.3 | 90.1 | 100.0 |
| 계 | | 2,171 | 4.7 | 25.4 | 69.9 | 100.0 |
| 직위 | 시설장 | 408 | 1.7 | 18.4 | 79.9 | 100.0 |
| | 사무국장 | 179 | 1.7 | 21.8 | 76.5 | 100.0 |
| | 부장 | 74 | 5.4 | 40.5 | 54.1 | 100.0 |
| | 과장 | 169 | 4.7 | 27.8 | 67.5 | 100.0 |
| | 팀장 | 288 | 4.5 | 28.1 | 67.4 | 100.0 |
| | 대리 | 49 | 6.1 | 32.7 | 61.2 | 100.0 |
| | 선임 | 120 | 9.2 | 37.5 | 53.3 | 100.0 |
| | 평직원 | 824 | 6.3 | 24.3 | 69.4 | 100.0 |
| | 기타 | 60 | 0.0 | 31.7 | 68.3 | 100.0 |
| 계 | | 2,171 | 4.7 | 25.4 | 69.9 | 100.0 |

2) 희망하는 보수수준

○ 현재의 보수수준이 적당한가에 대한 문항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98.5%로 거의 전수가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함.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은 1.6%에 그쳤음.

〈표 2-33〉 현재 보수 수준이 적당한지에 대한 의견

| | 매우 적절하다 | 적절하다 | 적절하지않다 | 매우 적절하지않다 | 전체 |
|---|---------|------|--------|-----------|-------|
| 명 | 4 | 30 | 999 | 1,149 | 2,182 |
| % | 0.2 | 1.4 | 45.8 | 52.7 | 100.0 |

주: 결측값=16

○ 현재 보수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낮다는 의견이 99.8%로 거의 전수에 해당하였고, 높다는 의견은 겨우 4명에 불과함.

〈표 2-34〉 현재 보수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어떠한가

| | 매우 높다 | 높다 | 낮다 | 매우 낮다 | 전체 |
|---|-------|-----|-------|-------|-------|
| 명 | 3 | 1 | 1,035 | 1,109 | 2,148 |
| % | 0.1 | 0.0 | 48.2 | 51.6 | 100.0 |

주: 결측값=50

○ 희망하는 보수수준의 인상률에 대해서는 평균 24.5%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2-35〉 보수수준이 낮다면 몇 퍼센트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가

(단위: 명, %)

| 빈도 | 평균 | 표준편차 |
|-------|------|------|
| 2,144 | 24.5 | 7.9 |

주: 결측값=54

○ 시설유형 및 직위별로 희망하는 보수 인상률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설 유형별로는 자활후견기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가폭피해자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5~26%로 인상률 수준이 높았고, 부랑인노숙인시설이 22.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직위별로는, 시설장, 사무국장, 평직원의 인상률 수준이 높았고, 선임 및 대리, 팀장, 과장, 부장의 경우 희망 보수 인상률이 22~2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표 2-36〉 시설유형 및 직위별 월보수액 및 보수 인상율

(단위: 명, 천원, %)

| 구분 | | 명 | 보수 인상율 | 월 보수액 |
|----------|----------------|-------|--------|-------|
| 시설 유형 | 종합사회복지관 | 415 | 24.2 | 1,817 |
| | 부랑인노숙인시설 | 41 | 22.3 | 1,822 |
| | 노인복지시설 | 490 | 23.9 | 1,826 |
| | 아동복지시설 | 186 | 23.9 | 2,018 |
| | 장애인복지시설 | 547 | 24.0 | 1,916 |
| | 정신보건시설 | 77 | 24.6 | 1,982 |
| | 자활후견기관 | 93 | 25.8 | 1,667 |
| | 모부자복지시설 | 34 | 23.4 | 1,960 |
| | 성매매피해시설 | 17 | 25.6 | 1,656 |
|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 43 | 25.8 | 1,442 |
| | 지역아동센터 | 255 | 25.8 | 1,006 |
| 계 | | 2,198 | 24.3 | 1,762 |
| 직위 | 시설장 | 414 | 25.6 | 1,974 |
| | 사무국장 | 180 | 25.3 | 2,061 |
| | 부장 | 77 | 23.4 | 2,363 |
| | 과장 | 172 | 23.7 | 2,056 |
| | 팀장 | 294 | 23.3 | 1,809 |
| | 대리 | 50 | 22.8 | 1,808 |
| | 선임 | 120 | 22.3 | 1,720 |
| | 평직원 | 831 | 24.5 | 1,484 |
| | 기타 | 60 | 23.7 | 1,298 |
| 계 | | 2,198 | 24.3 | 1,762 |

3) 현 보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회복지시설 현 보수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가 심각하다는 비율이 31.4%, 시설유형별 임금 차이의 문제가 30.1%로 높게 나타남. 이외에 직급 내 호봉 인상율의 부적절함이 14.9%, 직급간 임금 차이의 부적절함이 6.1%, 직렬간 봉급의 차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6%로 나타남.

〈표 2-37〉 사회복지시설 현 보수체계의 문제점

| 구분 | 명 | % |
|--------------------------------|-------|-------|
| 직렬 간 봉급의 차이 부적절함 | 119 | 5.6 |
| 직급 간 임금 차이가 부적절함 | 131 | 6.1 |
| 직급 내 호봉 인상률이 부적절함 | 319 | 14.9 |
| 종사 시설별 임금 차이 | 644 | 30.1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 672 | 31.4 |
| 기타 | 258 | 12.0 |
| 계 | 2,143 | 100.0 |

주: 결측값=55

○ 현 보수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의 의무화가 25.5%로 높게 나타남. 이외에 복지시설에 대한 단일급여 체계 구축을 통한 시설별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가 18.4%, 운영 법인의 인건비 의무 지원금 책정이 14.8%로 나타남.

〈표 2-38〉 현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방안

| 구 분 | 명 | % |
|-------------------------------|-------|-------|
|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 의무화 | 550 | 25.5 |
| 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 | 765 | 35.5 |
| 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한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 | 397 | 18.4 |
| 시설 운영 법인의 인건비 의무 지원금 책정 | 319 | 14.8 |
| 기타 | 122 | 5.7 |
| 계 | 2,153 | 100.0 |

주: 결측값=45

4) 요약 및 함의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보수수준의 상향에 대한 필요성은 일관되게 나타났음.

- 조사 결과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시설 유형별로 보수수준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시설유형별 보수수준 현황을 살펴보면, 보수수준이 낮은 것과 보수체계에 호봉 및 경력에 대한 산정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음. 보수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시설로는 성매매피해시설,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들 시설의 경우 보수수준이 낮은 뿐만 아니라 경력 반영 등 보수산정기준이 비체계적임.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경력 및 직위에 대한 보수체계의 반영은 있으나, 기본급 수준이 타 시설유형에 비해 낮아 보수수준이 낮음.

- 둘째, 사회복지사 종사자 보수체계의 개선을 위해 이직자의 경력에 대한 일관된 산정 기준이 필요함. 조사에 따르면, 현 근무지에서 5년 이하 경력자는 70% 미만인

반면, 전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총 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는 50%로 현 근무 지에서의 경력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줌.

- 셋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처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보수체계 방식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시설유형간 보수수준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

- 넷째, 사회복지사의 현 업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직위가 높음에 따라 업무만족도가 높고, 낮을수록 업무만족도가 낮은 일관된 경향을 보임. 업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음⁶⁾.

- 사회복지사들은 현 보수체계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시설에서 인건비 지급시 정부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과 시설유형별로 보수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으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 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경과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에 대한 준수를 가장 많이 꼽았음.

- 즉, 시설유형별로 보수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의 제시가 필요하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함.

6) 예를 들면 근로환경, 급여 이외의 복지지원제도, 본인의 업무에 대한 영향력 정도, 전문능력의 발휘 정도, 동료와의 관계 등의 조직문화 까지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8. 인건비 가이드라인 체계 분석

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보수체계 비교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의 연봉을 비교할 때 보수체계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직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움이 있으며, 추이 정도의 비교는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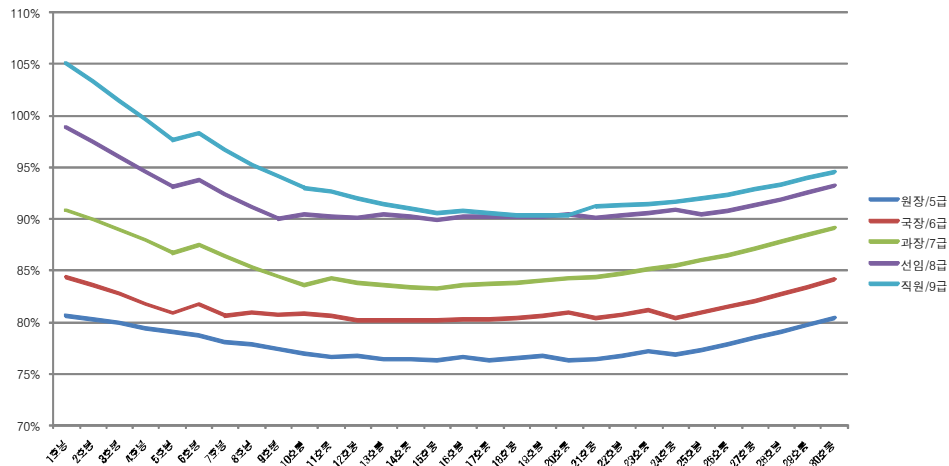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비교 집단으로서 공무원 보수의 95%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비교집단을 공무원으로 설정함.

- 먼저 시설 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에 있는 기본급과 수당을 보면, 시설 종사자의 경우 기본급 이외에 명절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가족수당과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직무수당 및 종사자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분석에서 제외함.

-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활용하였는데, 공무원의 경우 수당이 32종이나 되고 있고, 실비보상은 가계지원비 등 6종이 있음. 이 가운데 정근수당, 그리고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였고,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특수근무수당 등은 제외하여 보수를 산정함.

〈표 2-39〉 2010년 생활시설종사자와 공무원의 봉급 비교 요약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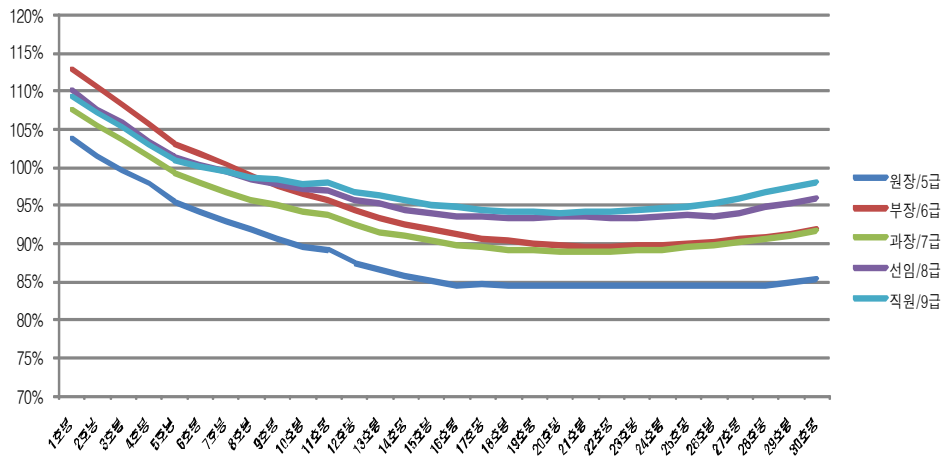
| | 원장/5급 | 국장/6급 | 과장/7급 | 선임/8급 | 직원/9급 |
|------|-------|-------|-------|-------|--------|
| 1호봉 | 80.3% | 84.2% | 90.9% | 99.4% | 106.1% |
| 2호봉 | 80.1% | 83.4% | 90.0% | 97.9% | 104.1% |
| 3호봉 | 79.8% | 82.5% | 89.0% | 96.4% | 102.2% |
| 4호봉 | 79.1% | 81.6% | 87.9% | 94.9% | 100.2% |
| 5호봉 | 78.8% | 80.6% | 86.7% | 93.3% | 98.2% |
| 6호봉 | 78.5% | 81.5% | 87.5% | 94.0% | 98.7% |
| 7호봉 | 77.9% | 80.4% | 86.4% | 92.5% | 97.0% |
| 8호봉 | 77.6% | 80.7% | 85.2% | 91.2% | 95.6% |
| 9호봉 | 77.1% | 80.6% | 84.3% | 90.1% | 94.3% |
| 10호봉 | 76.7% | 80.6% | 83.5% | 90.6% | 93.2% |
| 11호봉 | 76.4% | 80.5% | 84.2% | 90.3% | 92.9% |
| 12호봉 | 76.5% | 80.0% | 83.7% | 90.2% | 92.2% |
| 13호봉 | 76.2% | 79.9% | 83.4% | 90.6% | 91.6% |
| 14호봉 | 76.2% | 80.0% | 83.3% | 90.3% | 91.1% |
| 15호봉 | 76.1% | 80.0% | 83.2% | 90.0% | 90.7% |
| 16호봉 | 76.4% | 80.1% | 83.5% | 90.3% | 90.9% |
| 17호봉 | 76.1% | 80.1% | 83.6% | 90.3% | 90.6% |
| 18호봉 | 76.3% | 80.2% | 83.7% | 90.3% | 90.5% |
| 19호봉 | 76.5% | 80.5% | 83.9% | 90.4% | 90.4% |
| 20호봉 | 76.1% | 80.8% | 84.2% | 90.5% | 90.4% |
| 21호봉 | 76.2% | 80.2% | 84.3% | 90.2% | 91.3% |
| 22호봉 | 76.6% | 80.6% | 84.7% | 90.4% | 91.5% |
| 23호봉 | 77.0% | 81.1% | 85.1% | 90.7% | 91.6% |
| 24호봉 | 76.7% | 80.3% | 85.5% | 91.0% | 91.8% |
| 25호봉 | 77.2% | 80.8% | 86.0% | 90.5% | 92.1% |
| 26호봉 | 77.7% | 81.4% | 86.5% | 90.9% | 92.5% |
| 27호봉 | 78.3% | 82.0% | 87.1% | 91.5% | 93.0% |
| 28호봉 | 79.0% | 82.6% | 87.8% | 92.0% | 93.5% |
| 29호봉 | 79.7% | 83.3% | 88.5% | 92.7% | 94.1% |
| 30호봉 | 80.3% | 84.1% | 89.2% | 93.3% | 94.7% |



[그림 2-2] 요약표 - 생활시설

〈표 2-40〉 2010년 복지관 종사자와 공무원의 봉급 비교 요약표

| | 원장/5급 | 부장/6급 | 과장/7급 | 선임/8급 | 직원/9급 |
|------|--------|--------|--------|--------|--------|
| 1호봉 | 104.2% | 114.0% | 108.5% | 111.2% | 110.5% |
| 2호봉 | 102.0% | 111.4% | 106.1% | 108.5% | 108.1% |
| 3호봉 | 100.0% | 108.9% | 104.1% | 106.8% | 106.3% |
| 4호봉 | 98.1% | 106.4% | 101.9% | 104.1% | 103.6% |
| 5호봉 | 95.7% | 103.7% | 99.8% | 102.0% | 101.6% |
| 6호봉 | 94.4% | 102.3% | 98.4% | 101.0% | 100.8% |
| 7호봉 | 93.2% | 100.7% | 97.2% | 100.0% | 100.0% |
| 8호봉 | 92.1% | 99.3% | 96.1% | 98.9% | 99.0% |
| 9호봉 | 90.8% | 97.8% | 95.3% | 98.2% | 98.8% |
| 10호봉 | 89.8% | 96.8% | 94.5% | 97.5% | 98.2% |
| 11호봉 | 89.1% | 95.9% | 93.9% | 97.4% | 98.4% |
| 12호봉 | 87.5% | 94.7% | 92.7% | 96.1% | 97.2% |
| 13호봉 | 86.5% | 93.6% | 91.7% | 95.5% | 96.7% |
| 14호봉 | 85.7% | 92.7% | 91.1% | 94.7% | 95.9% |
| 15호봉 | 85.0% | 92.0% | 90.4% | 94.1% | 95.4% |
| 16호봉 | 84.5% | 91.4% | 89.9% | 93.8% | 95.0% |
| 17호봉 | 84.6% | 90.8% | 89.6% | 93.9% | 94.6% |
| 18호봉 | 84.6% | 90.5% | 89.3% | 93.6% | 94.4% |
| 19호봉 | 84.6% | 90.1% | 89.1% | 93.6% | 94.4% |
| 20호봉 | 84.5% | 89.9% | 89.0% | 93.7% | 94.3% |
| 21호봉 | 84.4% | 89.7% | 88.9% | 93.7% | 94.3% |
| 22호봉 | 84.5% | 89.7% | 89.0% | 93.6% | 94.5% |
| 23호봉 | 84.5% | 89.8% | 89.1% | 93.6% | 94.6% |
| 24호봉 | 84.5% | 89.9% | 89.3% | 93.9% | 94.9% |
| 25호봉 | 84.6% | 90.2% | 89.6% | 93.9% | 95.1% |
| 26호봉 | 84.5% | 90.4% | 89.8% | 93.8% | 95.5% |
| 27호봉 | 84.6% | 90.6% | 90.3% | 94.3% | 96.1% |
| 28호봉 | 84.4% | 91.0% | 90.7% | 95.0% | 97.1% |
| 29호봉 | 84.8% | 91.5% | 91.2% | 95.6% | 97.7% |
| 30호봉 | 85.3% | 91.9% | 91.7% | 96.2% | 98.4% |



[그림 2-3] 요약표 - 복지관

나.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보수체계 비교

○ 생활시설 종사자와 이용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비교할 경우 생활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이용시설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직급이 높을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원장 및 국장 등 상위직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이용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만, 여기에서는 연장 근로수당이 제외되어 있음.

〈표 2-41〉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종사자의 봉급 비교 요약 (생활시설/이용시설)

| | 원장/관장 | 국장/부장 | 과장/과장 | 선입/선입 | 직원/직원 |
|------|-------|-------|-------|-------|-------|
| 1호봉 | 77.1% | 73.9% | 83.8% | 89.4% | 96.0% |
| 2호봉 | 78.5% | 74.9% | 84.8% | 90.2% | 96.3% |
| 3호봉 | 79.8% | 75.8% | 85.5% | 90.3% | 96.1% |
| 4호봉 | 80.7% | 76.7% | 86.2% | 91.2% | 96.7% |
| 5호봉 | 82.3% | 77.7% | 86.8% | 91.5% | 96.7% |
| 6호봉 | 83.1% | 79.7% | 88.9% | 93.2% | 97.9% |
| 7호봉 | 83.6% | 79.9% | 88.9% | 92.5% | 97.0% |
| 8호봉 | 84.3% | 81.2% | 88.7% | 92.2% | 96.5% |
| 9호봉 | 85.0% | 82.4% | 88.4% | 91.7% | 95.5% |
| 10호봉 | 85.5% | 83.3% | 88.3% | 92.9% | 95.0% |
| 11호봉 | 85.8% | 84.0% | 89.6% | 92.7% | 94.4% |
| 12호봉 | 87.4% | 84.5% | 90.3% | 93.9% | 94.8% |
| 13호봉 | 88.1% | 85.5% | 91.0% | 94.9% | 94.7% |
| 14호봉 | 88.9% | 86.3% | 91.4% | 95.3% | 95.0% |
| 15호봉 | 89.5% | 87.0% | 91.9% | 95.6% | 95.1% |
| 16호봉 | 90.4% | 87.6% | 92.9% | 96.3% | 95.6% |
| 17호봉 | 90.0% | 88.2% | 93.3% | 96.2% | 95.8% |
| 18호봉 | 90.2% | 88.6% | 93.8% | 96.4% | 95.8% |
| 19호봉 | 90.5% | 89.3% | 94.2% | 96.6% | 95.8% |
| 20호봉 | 90.0% | 89.9% | 94.6% | 96.6% | 95.9% |
| 21호봉 | 90.3% | 89.4% | 94.9% | 96.2% | 96.8% |
| 22호봉 | 90.6% | 89.8% | 95.1% | 96.6% | 96.7% |
| 23호봉 | 91.1% | 90.3% | 95.4% | 96.9% | 96.8% |
| 24호봉 | 90.7% | 89.3% | 95.7% | 97.0% | 96.8% |
| 25호봉 | 91.2% | 89.6% | 96.0% | 96.3% | 96.8% |
| 26호봉 | 91.9% | 90.0% | 96.2% | 96.9% | 96.9% |
| 27호봉 | 92.6% | 90.4% | 96.5% | 97.0% | 96.8% |
| 28호봉 | 93.5% | 90.7% | 96.8% | 96.9% | 96.3% |
| 29호봉 | 93.9% | 91.1% | 97.0% | 97.0% | 96.3% |
| 30호봉 | 94.2% | 91.4% | 97.2% | 97.0% | 96.2% |

다. 종사자 급여 개선 수준

○ 원장이나 국장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운데 고위직의 경우 공무원과의 비교가 5급이나 6급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으며,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5급으로의 승진이 사회복지시설 원장으로의 임명되는 것보다 훨씬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사회복지시설의 원장이나 관장이 5급과 직접 비교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음.

- 이에 따라 시설의 규모에 따라 5급 원장과 6급 원장 등을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임금수준의 비교도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는 5급과 6급의 평균인 5.5급,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국장이나 부장의 경우 6급과 7급의 평균인 6.5급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다음의 표는 공무원의 임금 기준표 가운데 5.5급과 6.5급을 포함한 것이며, 5.5급과 6.5급은 각각 5급과 6급의 평균을, 그리고 6급과 7급의 평균을 사용함. 그 결과 5.5급 1호봉은 25,672천원, 그리고 30호봉은 48,551천원이 되며, 6.5급의 경우 1호봉은 21,909천원, 30호봉은 42,338천원으로 나타남.

〈표 2-42〉 일반직 공무원 5.5급과 6.5급의 호봉별 급여액

(단위: 천원)

| 연봉비교 | 공무원 | | | | | | |
|------|--------|--------|--------|--------|--------|--------|--------|
| | 5급 | 5.5급 | 6급 | 6.5급 | 7급 | 8급 | 9급 |
| 1호봉 | 28,331 | 25,672 | 23,013 | 21,909 | 20,805 | 18,477 | 16,729 |
| 2호봉 | 29,475 | 26,775 | 24,075 | 22,909 | 21,743 | 19,359 | 17,550 |
| 3호봉 | 30,668 | 27,925 | 25,182 | 23,961 | 22,739 | 20,296 | 18,426 |
| 4호봉 | 31,918 | 29,122 | 26,326 | 25,061 | 23,796 | 21,259 | 19,359 |
| 5호봉 | 33,215 | 30,363 | 27,512 | 26,204 | 24,896 | 22,273 | 20,315 |
| 6호봉 | 34,550 | 31,647 | 28,745 | 27,391 | 26,037 | 23,320 | 21,302 |
| 7호봉 | 35,920 | 32,956 | 29,993 | 28,597 | 27,201 | 24,386 | 22,264 |
| 8호봉 | 37,323 | 34,293 | 31,263 | 29,823 | 28,382 | 25,427 | 23,208 |
| 9호봉 | 38,744 | 35,649 | 32,553 | 31,041 | 29,529 | 26,440 | 24,131 |
| 10호봉 | 40,194 | 36,992 | 33,790 | 32,218 | 30,647 | 27,421 | 25,033 |
| 11호봉 | 41,578 | 38,283 | 34,988 | 33,356 | 31,725 | 28,385 | 25,912 |
| 12호봉 | 42,678 | 39,320 | 35,962 | 34,281 | 32,600 | 29,166 | 26,636 |
| 13호봉 | 43,723 | 40,301 | 36,879 | 35,155 | 33,431 | 29,916 | 27,328 |
| 14호봉 | 44,697 | 41,222 | 37,746 | 35,986 | 34,226 | 30,630 | 28,002 |
| 15호봉 | 45,617 | 42,097 | 38,577 | 36,780 | 34,983 | 31,317 | 28,647 |
| 16호봉 | 46,484 | 42,921 | 39,357 | 37,530 | 35,703 | 31,980 | 29,272 |
| 17호봉 | 47,298 | 43,699 | 40,101 | 38,247 | 36,393 | 32,601 | 29,880 |
| 18호봉 | 48,069 | 44,437 | 40,805 | 38,928 | 37,051 | 33,202 | 30,449 |
| 19호봉 | 48,792 | 45,132 | 41,471 | 39,571 | 37,670 | 33,779 | 31,005 |
| 20호봉 | 49,469 | 45,785 | 42,100 | 40,181 | 38,261 | 34,328 | 31,538 |
| 21호봉 | 50,109 | 46,406 | 42,703 | 40,764 | 38,825 | 34,855 | 32,039 |
| 22호봉 | 50,710 | 46,990 | 43,270 | 41,314 | 39,358 | 35,359 | 32,521 |
| 23호봉 | 51,277 | 47,540 | 43,803 | 41,838 | 39,874 | 35,840 | 32,978 |
| 24호봉 | 51,806 | 48,060 | 44,314 | 42,338 | 40,363 | 36,303 | 33,421 |
| 25호봉 | 52,305 | 48,551 | 44,796 | 42,810 | 40,823 | 36,741 | 33,839 |
| 26호봉 | 52,776 | 49,015 | 45,253 | 43,260 | 41,267 | 37,167 | 34,220 |
| 27호봉 | 53,168 | 49,427 | 45,686 | 43,665 | 41,643 | 37,524 | 34,547 |
| 28호봉 | 53,544 | 49,797 | 46,049 | 44,021 | 41,993 | 37,865 | 34,861 |
| 29호봉 | 53,889 | 50,140 | 46,391 | 44,361 | 42,332 | 38,190 | 35,168 |
| 30호봉 | 54,225 | 50,475 | 46,725 | 44,689 | 42,653 | 38,504 | 35,461 |

다음의 표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목표치라고 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연간 급여액의 95% 수준에 해당하는 연간 보수액의 수준임.

〈표 2-43〉 일반직 공무원 연간 급여 대비 95%의 급여 수준

(단위: 천원)

| 연봉비교 | 공무원 대비 95% 수준 | | | | | | |
|------|---------------|--------|--------|--------|--------|--------|--------|
| | 5급 | 5.5급 | 6급 | 6.5급 | 7급 | 8급 | 9급 |
| 1호봉 | 26,915 | 24,389 | 21,863 | 20,814 | 19,765 | 17,553 | 15,892 |
| 2호봉 | 28,001 | 25,436 | 22,871 | 21,763 | 20,656 | 18,391 | 16,672 |
| 3호봉 | 29,134 | 26,529 | 23,923 | 22,763 | 21,603 | 19,281 | 17,504 |
| 4호봉 | 30,322 | 27,666 | 25,010 | 23,808 | 22,606 | 20,196 | 18,391 |
| 5호봉 | 31,554 | 28,845 | 26,137 | 24,894 | 23,652 | 21,160 | 19,299 |
| 6호봉 | 32,822 | 30,065 | 27,308 | 26,021 | 24,735 | 22,154 | 20,237 |
| 7호봉 | 34,124 | 31,309 | 28,493 | 27,167 | 25,841 | 23,167 | 21,151 |
| 8호봉 | 35,457 | 32,578 | 29,700 | 28,332 | 26,963 | 24,155 | 22,048 |
| 9호봉 | 36,807 | 33,866 | 30,926 | 29,489 | 28,053 | 25,118 | 22,924 |
| 10호봉 | 38,184 | 35,142 | 32,101 | 30,608 | 29,115 | 26,050 | 23,781 |
| 11호봉 | 39,499 | 36,369 | 33,239 | 31,689 | 30,138 | 26,965 | 24,616 |
| 12호봉 | 40,544 | 37,354 | 34,164 | 32,567 | 30,970 | 27,707 | 25,304 |
| 13호봉 | 41,537 | 38,286 | 35,035 | 33,397 | 31,759 | 28,420 | 25,962 |
| 14호봉 | 42,462 | 39,160 | 35,859 | 34,187 | 32,515 | 29,099 | 26,602 |
| 15호봉 | 43,336 | 39,992 | 36,649 | 34,941 | 33,234 | 29,752 | 27,215 |
| 16호봉 | 44,160 | 40,774 | 37,389 | 35,653 | 33,918 | 30,381 | 27,809 |
| 17호봉 | 44,933 | 41,514 | 38,096 | 36,334 | 34,573 | 30,971 | 28,386 |
| 18호봉 | 45,666 | 42,215 | 38,765 | 36,982 | 35,198 | 31,542 | 28,926 |
| 19호봉 | 46,352 | 42,875 | 39,398 | 37,592 | 35,786 | 32,090 | 29,454 |
| 20호봉 | 46,996 | 43,495 | 39,995 | 38,172 | 36,348 | 32,612 | 29,961 |
| 21호봉 | 47,604 | 44,086 | 40,568 | 38,726 | 36,884 | 33,112 | 30,437 |
| 22호봉 | 48,175 | 44,641 | 41,107 | 39,248 | 37,390 | 33,591 | 30,895 |
| 23호봉 | 48,714 | 45,163 | 41,613 | 39,746 | 37,880 | 34,048 | 31,329 |
| 24호봉 | 49,215 | 45,657 | 42,098 | 40,221 | 38,345 | 34,488 | 31,750 |
| 25호봉 | 49,689 | 46,123 | 42,557 | 40,669 | 38,782 | 34,904 | 32,147 |
| 26호봉 | 50,137 | 46,564 | 42,991 | 41,097 | 39,204 | 35,309 | 32,509 |
| 27호봉 | 50,510 | 46,956 | 43,402 | 41,481 | 39,561 | 35,647 | 32,820 |
| 28호봉 | 50,867 | 47,307 | 43,747 | 41,820 | 39,893 | 35,972 | 33,118 |
| 29호봉 | 51,195 | 47,633 | 44,071 | 42,143 | 40,215 | 36,280 | 33,409 |
| 30호봉 | 51,514 | 47,951 | 44,389 | 42,454 | 40,520 | 36,579 | 33,688 |

-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연간 보수가 공무원의 95%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표에 나타나고 있는 금액만큼 조정이 되어야 함. 다만, 하위직 시설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보다 소폭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의 시설 종사자는 현재의 보수 수준에서 금액이 추가 지급 등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2-44〉 일반직 공무원 대비 95% 수준이 되기 위한 생활시설 종사자의 추가 급여 수준

(단위: 천원)

| 생활시설 연봉비교 | 공무원 대비 95% 수준 | | | | | | |
|--------------|---------------|-------|-------|-------|-------|-------|--------|
| | 5급 | 5.5급 | 6급 | 6.5급 | 7급 | 8급 | 9급 |
| 1호봉 | 4,152 | 1,626 | 2,480 | 1,431 | 850 | -816 | -1,853 |
| 2호봉 | 4,393 | 1,828 | 2,786 | 1,678 | 1,07 | -563 | -1,606 |
| 3호봉 | 4,668 | 2,063 | 3,136 | 1,976 | 1,362 | -284 | -1,320 |
| 4호봉 | 5,063 | 2,407 | 3,534 | 2,332 | 1,689 | 20 | -1,005 |
| 5호봉 | 5,385 | 2,676 | 3,959 | 2,716 | 2,072 | 373 | -643 |
| 6호봉 | 5,691 | 2,934 | 3,882 | 2,595 | 1,946 | 223 | -797 |
| 7호봉 | 6,148 | 3,333 | 4,365 | 3,039 | 2,350 | 612 | -455 |
| 8호봉 | 6,493 | 3,614 | 4,467 | 3,099 | 2,783 | 963 | -130 |
| 9호봉 | 6,920 | 3,979 | 4,692 | 3,255 | 3,171 | 1,289 | 161 |
| 10호봉 | 7,348 | 4,306 | 4,853 | 3,360 | 3,531 | 1,220 | 446 |
| 11호봉 | 7,714 | 4,584 | 5,081 | 3,531 | 3,436 | 1,329 | 553 |
| 12호봉 | 7,888 | 4,698 | 5,382 | 3,785 | 3,670 | 1,395 | 747 |
| 13호봉 | 8,218 | 4,967 | 5,551 | 3,913 | 3,861 | 1,315 | 937 |
| 14호봉 | 8,389 | 5,087 | 5,660 | 3,988 | 4,019 | 1,435 | 1,096 |
| 15호봉 | 8,613 | 5,269 | 5,800 | 4,092 | 4,140 | 1,555 | 1,241 |
| 16호봉 | 8,644 | 5,258 | 5,864 | 4,128 | 4,096 | 1,495 | 1,211 |
| 17호봉 | 8,923 | 5,504 | 5,986 | 4,224 | 4,153 | 1,526 | 1,307 |
| 18호봉 | 8,980 | 5,529 | 6,031 | 4,248 | 4,180 | 1,564 | 1,379 |
| 19호봉 | 9,003 | 5,526 | 6,027 | 4,221 | 4,170 | 1,566 | 1,413 |
| 20호봉 | 9,361 | 5,860 | 5,987 | 4,164 | 4,134 | 1,529 | 1,452 |
| 21호봉 | 9,410 | 5,892 | 6,313 | 4,471 | 4,137 | 1,678 | 1,187 |
| 22호봉 | 9,344 | 5,810 | 6,241 | 4,382 | 4,071 | 1,624 | 1,151 |
| 23호봉 | 9,246 | 5,695 | 6,110 | 4,243 | 3,963 | 1,548 | 1,117 |
| 24호봉 | 9,487 | 5,929 | 6,517 | 4,640 | 3,843 | 1,442 | 1,057 |
| 25호봉 | 9,324 | 5,758 | 6,352 | 4,464 | 3,682 | 1,650 | 986 |
| 26호봉 | 9,135 | 5,562 | 6,175 | 4,281 | 3,519 | 1,522 | 854 |
| 27호봉 | 8,871 | 5,317 | 5,962 | 4,041 | 3,278 | 1,327 | 684 |
| 28호봉 | 8,578 | 5,018 | 5,709 | 3,782 | 3,025 | 1,119 | 514 |
| 29호봉 | 8,269 | 4,707 | 5,409 | 3,481 | 2,749 | 881 | 311 |
| 30호봉 | 7,951 | 4,388 | 5,116 | 3,181 | 2,469 | 647 | 109 |

-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공무원의 95%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생활시설 원장의 경우 최대 22.5%(5급과 비교시)와 최소 12.9%(5.5급과 비교시) 정도 인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사무국장의 경우 17.1%(6급과 비교시)와 11.7%(6.5급과 비교시)는 인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과장급의 경우는 평균 10.9%의 인상이, 선임 생활지도원의 경우 3.4%, 생활지도원은 1.1%의 인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2-45〉 공무원 급여의 95%가 되기 위한 생활 시설 종사자 급여의 증가율

(단위: %)

| 생활시설 연봉비교 | 공무원 대비 95% 수준이 되기 위한 증가율 | | | | | | |
|--------------|--------------------------|-------|-------|-------|-------|------|-------|
| | 5급 | 5.5급 | 6급 | 6.5급 | 7급 | 8급 | 9급 |
| 1호봉 | 18.2 | 7.1 | 12.8 | 7.4 | 4.5 | -4.4 | -10.4 |
| 2호봉 | 18.6 | 7.7 | 13.9 | 8.4 | 5.5 | -3.0 | -8.8 |
| 3호봉 | 19.1 | 8.4 | 15.1 | 9.5 | 6.7 | -1.5 | -7.0 |
| 4호봉 | 20.0 | 9.5 | 16.5 | 10.9 | 8.1 | 0.1 | -5.2 |
| 5호봉 | 20.6 | 10.2 | 17.8 | 12.2 | 9.6 | 1.8 | -3.2 |
| 6호봉 | 21.0 | 10.8 | 16.6 | 11.1 | 8.5 | 1.0 | -3.8 |
| 7호봉 | 22.0 | 11.9 | 18.1 | 12.6 | 10.0 | 2.7 | -2.1 |
| 8호봉 | 22.4 | 12.5 | 17.7 | 12.3 | 11.5 | 4.2 | -0.6 |
| 9호봉 | 23.2 | 13.3 | 17.9 | 12.4 | 12.7 | 5.4 | 0.7 |
| 10호봉 | 23.8 | 14.0 | 17.8 | 12.3 | 13.8 | 4.9 | 1.9 |
| 11호봉 | 24.3 | 14.4 | 18.0 | 12.5 | 12.9 | 5.2 | 2.3 |
| 12호봉 | 24.2 | 14.4 | 18.7 | 13.1 | 13.4 | 5.3 | 3.0 |
| 13호봉 | 24.7 | 14.9 | 18.8 | 13.3 | 13.8 | 4.9 | 3.7 |
| 14호봉 | 24.6 | 14.9 | 18.7 | 13.2 | 14.1 | 5.2 | 4.3 |
| 15호봉 | 24.8 | 15.2 | 18.8 | 13.3 | 14.2 | 5.5 | 4.8 |
| 16호봉 | 24.3 | 14.8 | 18.6 | 13.1 | 13.7 | 5.2 | 4.6 |
| 17호봉 | 24.8 | 15.3 | 18.6 | 13.2 | 13.7 | 5.2 | 4.8 |
| 18호봉 | 24.5 | 15.1 | 18.4 | 13.0 | 13.5 | 5.2 | 5.0 |
| 19호봉 | 24.1 | 14.8 | 18.1 | 12.6 | 13.2 | 5.1 | 5.0 |
| 20호봉 | 24.9 | 15.6 | 17.6 | 12.2 | 12.8 | 4.9 | 5.1 |
| 21호봉 | 24.6 | 15.4 | 18.4 | 13.1 | 12.6 | 5.3 | 4.1 |
| 22호봉 | 24.1 | 15.0 | 17.9 | 12.6 | 12.2 | 5.1 | 3.9 |
| 23호봉 | 23.4 | 14.4 | 17.2 | 12.0 | 11.7 | 4.8 | 3.7 |
| 24호봉 | 23.9 | 14.9 | 18.3 | 13.0 | 11.1 | 4.4 | 3.4 |
| 25호봉 | 23.1 | 14.3 | 17.5 | 12.3 | 10.5 | 5.0 | 3.2 |
| 26호봉 | 22.3 | 13.6 | 16.8 | 11.6 | 9.9 | 4.5 | 2.7 |
| 27호봉 | 21.3 | 12.8 | 15.9 | 10.8 | 9.0 | 3.9 | 2.1 |
| 28호봉 | 20.3 | 11.9 | 15.0 | 9.9 | 8.2 | 3.2 | 1.6 |
| 29호봉 | 19.3 | 11.0 | 14.0 | 9.0 | 7.3 | 2.5 | 0.9 |
| 30호봉 | 18.3 | 10.1 | 13.0 | 8.1 | 6.5 | 1.8 | 0.3 |
| 평균 | 22.48 | 12.94 | 17.09 | 11.70 | 10.85 | 3.44 | 1.00 |

- 사회복지 종사자의 연간 보수가 공무원의 95%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표에 나타나고 있는 금액만큼 조정이 되어야 함. 다만, 하위직 이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보다 소폭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의 시설 종사자는 현재의 보수 수준에서 금액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실은 그 동안의 하후상박의 임금 증가 추이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따라서 지금부터는 시설

의 원장과 국장 등 고위직의 임금 상승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46〉 일반직 공무원 대비 95% 수준이 되기 위한 이용시설 종사자의 추가 급여 수준

(단위: 천원)

| 이용시설 연봉비교 | 공무원 대비 95% 수준 | | | | | | |
|--------------|---------------|--------|--------|--------|--------|--------|--------|
| | 5급 | 5.5급 | 6급 | 6.5급 | 7급 | 8급 | 9급 |
| 1호봉 | -2,608 | -5,134 | -4,371 | -5,420 | -2,803 | -3,000 | -2,594 |
| 2호봉 | -2,055 | -4,620 | -3,948 | -5,056 | -2,419 | -2,617 | -2,308 |
| 3호봉 | -1,520 | -4,125 | -3,494 | -4,654 | -2,070 | -2,390 | -2,074 |
| 4호봉 | -982 | -3,638 | -3,005 | -4,207 | -1,652 | -1,930 | -1,668 |
| 5호봉 | -231 | -2,940 | -2,398 | -3,641 | -1,204 | -1,564 | -1,332 |
| 6호봉 | 192 | -2,565 | -2,098 | -3,385 | -888 | -1,389 | -1,239 |
| 7호봉 | 649 | -2,166 | -1,719 | -3,045 | -588 | -1,221 | -1,118 |
| 8호봉 | 1,09 | -1,781 | -1,357 | -2,725 | -311 | -1,000 | -936 |
| 9호봉 | 1,642 | -1,299 | -898 | -2,335 | -92 | -856 | -918 |
| 10호봉 | 2,109 | -933 | -620 | -2,113 | 151 | -678 | -789 |
| 11호봉 | 2,436 | -694 | -301 | -1,851 | 342 | -686 | -877 |
| 12호봉 | 3,182 | -8 | 91 | -1,506 | 745 | -321 | -592 |
| 13호봉 | 3,707 | 456 | 533 | -1,105 | 1,105 | -141 | -467 |
| 14호봉 | 4,151 | 849 | 850 | -822 | 1,328 | 83 | -256 |
| 15호봉 | 4,544 | 1,200 | 1,172 | -536 | 1,592 | 268 | -111 |
| 16호봉 | 4,887 | 1,501 | 1,418 | -318 | 1,808 | 390 | -11 |
| 17호봉 | 4,919 | 1,500 | 1,683 | -79 | 1,982 | 369 | 124 |
| 18호봉 | 5,015 | 1,564 | 1,832 | 49 | 2,126 | 459 | 170 |
| 19호봉 | 5,090 | 1,613 | 2,036 | 230 | 2,207 | 487 | 191 |
| 20호봉 | 5,201 | 1,700 | 2,152 | 329 | 2,301 | 437 | 230 |
| 21호봉 | 5,289 | 1,771 | 2,257 | 415 | 2,369 | 443 | 212 |
| 22호봉 | 5,327 | 1,793 | 2,276 | 417 | 2,355 | 506 | 150 |
| 23호봉 | 5,385 | 1,834 | 2,288 | 421 | 2,338 | 495 | 116 |
| 24호봉 | 5,431 | 1,873 | 2,240 | 363 | 2,309 | 415 | 30 |
| 25호봉 | 5,450 | 1,884 | 2,166 | 278 | 2,213 | 389 | -28 |
| 26호봉 | 5,53 | 1,961 | 2,093 | 199 | 2,128 | 456 | -173 |
| 27호봉 | 5,556 | 2,002 | 1,997 | 76 | 1,965 | 261 | -369 |
| 28호봉 | 5,653 | 2,093 | 1,822 | -105 | 1,790 | -12 | -734 |
| 29호봉 | 5,474 | 1,912 | 1,639 | -289 | 1,605 | -224 | -963 |
| 30호봉 | 5,286 | 1,723 | 1,437 | -498 | 1,390 | -458 | -1,217 |

- 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생활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의 수준이 높고, 그 결과 공무원과의 비교시에도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호봉이

높은 관장이나 부장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수 수준의 인상이 필요함.

〈표 2-47〉 공무원 연간 급여의 95%가 되기 위한 이용 시설 종사자 급여의 증가율

(단위: %)

| 이용시설 | 공무원 대비 95% 수준 | | | | | | |
|------|---------------|-------|-------|-------|-------|-------|-------|
| | 5급 | 5.5급 | 6급 | 6.5급 | 7급 | 8급 | 9급 |
| 1호봉 | -8.8 | -17.4 | -16.7 | -0.2 | -12.4 | -14.6 | -14.0 |
| 2호봉 | -6.8 | -15.4 | -14.7 | -0.2 | -10.5 | -12.5 | -12.2 |
| 3호봉 | -5.0 | -13.5 | -12.7 | -0.2 | -8.7 | -11.0 | -10.6 |
| 4호봉 | -3.1 | -11.6 | -10.7 | -0.2 | -6.8 | -8.7 | -8.3 |
| 5호봉 | -0.7 | -9.2 | -8.4 | -0.1 | -4.8 | -6.9 | -6.5 |
| 6호봉 | 0.6 | -7.9 | -7.1 | -0.1 | -3.5 | -5.9 | -5.8 |
| 7호봉 | 1.9 | -6.5 | -5.7 | -0.1 | -2.2 | -5.0 | -5.0 |
| 8호봉 | 3.2 | -5.2 | -4.4 | -0.1 | -1.1 | -4.0 | -4.1 |
| 9호봉 | 4.7 | -3.7 | -2.8 | -0.1 | -0.3 | -3.3 | -3.9 |
| 10호봉 | 5.8 | -2.6 | -1.9 | -0.1 | 0.5 | -2.5 | -3.2 |
| 11호봉 | 6.6 | -1.9 | -0.9 | -0.1 | 1.1 | -2.5 | -3.4 |
| 12호봉 | 8.5 | -0.0 | 0.3 | -0.0 | 2.5 | -1.1 | -2.3 |
| 13호봉 | 9.8 | 1.2 | 1.5 | -0.0 | 3.6 | -0.5 | -1.8 |
| 14호봉 | 10.8 | 2.2 | 2.4 | -0.0 | 4.3 | 0.3 | -1.0 |
| 15호봉 | 11.7 | 3.1 | 3.3 | -0.0 | 5.0 | 0.9 | -0.4 |
| 16호봉 | 12.4 | 3.8 | 3.9 | -0.0 | 5.6 | 1.3 | -0.0 |
| 17호봉 | 12.3 | 3.7 | 4.6 | -0.0 | 6.1 | 1.2 | 0.4 |
| 18호봉 | 12.3 | 3.8 | 5.0 | 0.0 | 6.4 | 1.5 | 0.6 |
| 19호봉 | 12.3 | 3.9 | 5.4 | 0.0 | 6.6 | 1.5 | 0.7 |
| 20호봉 | 12.4 | 4.1 | 5.7 | 0.0 | 6.8 | 1.4 | 0.8 |
| 21호봉 | 12.5 | 4.2 | 5.9 | 0.0 | 6.9 | 1.4 | 0.7 |
| 22호봉 | 12.4 | 4.2 | 5.9 | 0.0 | 6.7 | 1.5 | 0.5 |
| 23호봉 | 12.4 | 4.2 | 5.8 | 0.0 | 6.6 | 1.5 | 0.4 |
| 24호봉 | 12.4 | 4.3 | 5.6 | 0.0 | 6.4 | 1.2 | 0.1 |
| 25호봉 | 12.3 | 4.3 | 5.4 | 0.0 | 6.1 | 1.1 | -0.1 |
| 26호봉 | 12.4 | 4.4 | 5.1 | 0.0 | 5.7 | 1.3 | -0.5 |
| 27호봉 | 12.4 | 4.5 | 4.8 | 0.0 | 5.2 | 0.7 | -1.1 |
| 28호봉 | 12.5 | 4.6 | 4.3 | -0.0 | 4.7 | -0.0 | -2.2 |
| 29호봉 | 12.0 | 4.2 | 3.9 | -0.0 | 4.2 | -0.6 | -2.8 |
| 30호봉 | 11.4 | 3.7 | 3.3 | -0.0 | 3.6 | -1.2 | -3.5 |
| 평균 | 7.46 | -0.88 | -0.13 | -0.05 | 1.80 | -2.12 | -2.95 |

라. 요약 및 함의

○ 공무원의 경우 각 직급별 호봉의 차이는 낮은 직급의 경우 낮은 호봉에서 그 리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중간 단계의 호봉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호봉 이 높아질수록 호봉의 차이는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직급이 높아질수록 급간 의 봉급 차이도 커지는 추세를 보임.

- 이에 비하여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급여기준표의 경우 원장이나 사무국 장 등 상위직급의 중간 호봉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 외의 직급에서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생활지도원과 기능직 관리직의 경우 종사자의 급여가 동결된 것으로 나타 났음. 이러한 사실은 공무원의 봉급이 동결되는 상황 하에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열악한 고위직 종사자의 봉급 수준을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간 차이는 호봉이 증가할 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며 직급이 높아져도 공무원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크지 않음.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결국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과의 비교시 이러한 결과는 생활시설 원장 의 경우 첫 호봉부터 낮은 수준이 계속 이어지는 반면, 이용시설의 경우 호봉이 낮 을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의 연봉보다 높았다가 호봉이 상승할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하후상박의 상태에 있으 며, 특히 중간 호봉인 15호봉 내외에서 가장 낮은 현상을 보여 주고 있음. 이에 따 라 중간호봉이상 부터의 인건비 인상률이 높아져야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이 러한 사실은 국장 등 중간 고위직에도 해당되며 다만, 선임 생활지도원급이나 직원 급은 호봉이 낮은 경우 오히려 공무원보다 급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므로, 임금 상승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 특히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수당체계가 운용되고 있으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경우 연봉제로의 전환으로 수당이 단순화되었음. 다만,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등 시설 유형에 따른 급여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당제도의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생활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이용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생활시설 직무 수당 등의 신설을 통해 급여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때에는 이러한 수당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격차가 해소되면 수당제도도 폐지하는 등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

- 원장이나 국장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운데 고위직의 경우 공무원과의 비교가 5급이나 6급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 결과 원장이나 사무국장 등을 공무원의 5급과 6급으로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시설 종사자 급여 비교의 집단으로서 공무원 5.5급과 6.5급에 대한 제안함. 이때 보다 중요한 것은 5급 원장, 6급 원장, 또는 6급 국장, 7급 국장의 구분을 위한 명확한 지침이 먼저 제시되어야 함.

- 사회복지 종사자의 연간 보수가 공무원의 95%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격차의 해소와 하위직과 고위직의 격차문제를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하위직 이용 시설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보다 소폭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의 시설 종사자는 현재의 보수 수준에서 금액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실은 그 동안의 하후상박의 임금 증가 추이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따라서 지금부터는 시설의 원장과 국장 등 고위직의 임금 상승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생활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의 수준이 높고, 그 결과 공무원과의 비교시에도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호봉이 높은 관장이나 부장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수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공무원과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은 하위직급의 경우 단기간에 95% 달성이라는 목표치에 접근하게 하고, 고위직급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격차의 해소를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때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용시설 종사자보다 높은 급여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Ⅲ. 결론 및 정책 건의

1. 결론

○ 사회복지현장의 낙후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어왔으나, 저임금, 과중한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 근로기준법 미준수 등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한 높은 이직율과 짧은 근속기간 등 복지현장의 인력누수현상은 시급한 해결과제임.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하고 있어 시도별, 시설별 편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낮은 보수 수준은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 저하 및 전문 인력의 안정적 수급 저해를 초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지방이양 이후, 종사자 인건비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 차원에서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름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일부 개선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액은 2009년 말 현재 평균 2,063,469원이며, 호봉별 평균급여의 평균은 2,497,816원으로 나타나, 2008년 연구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그동안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해석되나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급여의 차이나 지역별 급여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의 개선이 요구됨.

- 사회복지사들은 현 보수체계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시설에서 인건비 지급시 정부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과 시설유형별로 보수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음.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 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경과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에 대한 준수를 가장 많이 꼽았음. 즉, 시설유형별로 보수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의 제시가 필요하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지원하는 체계

가 필요함을 말함.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복지시설 인력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을 사업비와 별도로 지급, 혹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등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재원에 대해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관련한 문제점으로서는 먼저, 근무 시설 유형에 따른 급여의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임. 즉,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의 종류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 간 임금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같은 종류의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른 급여의 차이가 있으며, 직급 간 급여의 차이가 존재함. 즉 낮은 호봉의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의 종사자에 비해 급여수준이 양호한 편이나, 중간관리직 이상 종사자의 급여 현실화가 필요함.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낮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음.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한편 현재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호봉간 기본급 차이, 동일 호봉간 직급간 기본급 차이가 적으며,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장기 근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됨. 또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며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지역별 준수율에 차이가 나므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는 같은 업무 종사자도 지역간 보수수준 차이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 및 사기 저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업비와 인건비를 합한 총액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까닭에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관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인사적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만큼이라도 항목별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등 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2. 정책 건의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상향 조정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및 보수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과의 급여 격차 최소화

○ 직급간, 직위간 기본급 상승의 폭을 확대하여 보수기준 상향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은 직급과 호봉이 낮은 종사자보다 직급과 호봉이 높은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며, 그 결과 호봉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장기간 근로할 의욕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므로 이직동기가 증가하게 됨. 따라서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종사자의 이직이 많아지고, 장기간 사회복지시설에의 근무 유인이 낮아지게 되어 결국 전문성 축적의 기회 제한으로 전문성 부족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임. 따라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보수기준의 상향 조정시에는 직급과 호봉간 격차가 반영된 보수체계가 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보수는 타 서비스 분야 직종과 대비해 분석했을 때, 그 수준이 전 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 대비 62.7%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실정임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절대액이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의 제고가 필요함. 이를 준용하는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권장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종사자의 처우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처럼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는 권장 사항이어서 준수율이 낮으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와 공무원 급여의 비교 직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특히 같은 원장(혹은 관장)이라고 해도 시설의 규모에 따라 업무의

강도 등의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시설의 규모나 예산 등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5급 수준의 원장(관장), 6급 수준의 원장(관장) 또는 7급 원장(관장) 등으로 차등을 두어야 할 것임.

2) 사회복지시설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 현재 지역, 직능(분야), 자격등급별 수당이나 직위의 명칭 등의 차이에 따라 일관성 있는 보수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각기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체계의 통일 등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소관부처별·시설별 적용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같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종사자의 인건비에 한해서 만이라도 공통된 급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사회복지시설 내 직급과 직위의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와 수준에 대한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간 동일한 급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즉, 지역에 따른 급여의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급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현재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아닌, 생활시설, 이용시설의 이원화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간 종사자의 보수 격차 문제 조정이 필요함. 이용시설 내 또는 생활시설 내에서는 종사자의 직위나 직무에 따른 단일호봉제의 적용을 검토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통일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를 시행령 등으로 법제화 하여 강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수당체계가 운용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연봉제로의 전환으로 수당이 단순화되어,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등 시설 유형에 따른 급여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당제도의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생활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이용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생활시설 직무 수당 등의 신설을 통해 급여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때에는 이러한 수당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격차가 해소되면 수당제도도 폐지하는 등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

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체계 개선

1) 예산편성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 항목 마련하여 중앙에서 직접 지원방안 검토

○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정부에 이양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개선을 각 개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보수체계 개선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종사자의 급여가 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현상의 예방이 필요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직접 지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요구도가 높은 실정임. 즉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업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예산 편성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의 직접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중앙부처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금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의 지방이양사업 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분권교부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방이양사업의 중앙 환원이나 또는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 신설 등 교부금 관련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현재의 통합보조금 형태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의 개선 고려

○ 사회복지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지방자치제도가 등장한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인 반면, 모든 시설의 지원은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현재 지급되고 있는 분권교부세의 지급이 종료된 시점 이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충분한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체계만 상향조정된다면, 운영비 및 사업비 압박요인이 되어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교부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같이 인건비의 국고환원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3) 급여 표준화를 위한 급여조정위원회(가칭) 설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산정기준을 협의하기 위해 정부 해당부처 공무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직능단체, 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급여조정기구의 설치가 요구됨. 급여조정위원회(가칭)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며, 여기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심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동일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급여체계 유도 등에 대해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를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공무원 보수조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는 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② 공무원 보수 수준의 결정, ③ 공무원의 종류, 직군 간 보수의 조정, ④ 기타 공무원 보수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참고 문헌

- 고경화 의원실(200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자료집.
- 곽정숙 의원실(2010),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0. 7. 9.
- 김희연(200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 백원우 의원실(20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9년 3월 27일.
- 변용찬 외(1999).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건강증진 및 시설 운영개선방안 연구. 서
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10). 201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부산복지개발원(2007).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재정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 신상진(200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 신용규(2009),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방안 논의,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통권 180호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200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서울: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이봉주, 최소연, 김희연(2008. 11.). 200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정무성,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과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
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정무성 외(2007), 서울시 사회복지인력 근로조건 및 처우실태보고서, 서울: 서울특별
시사회복지협의회.
- 정회원 의원실(2006), 복지 선진화에 소외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현실, 그
대안은 무엇인가?: 사회복지사 급여개선 정책토론회, 2006. 12. 12.
- 채구묵(2003),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개선과제 및 전략, 사회복지정책, 제16집.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7), 한국사회복지 근로환경백서, 서울: 양서원.

_____ (2010),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정 공청회 자료집, 서울:
2010. 4. 19.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10), 전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실태분석 및 개선방
안 연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도개선분과위원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2009). 2009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
고서 요약.